
한일관계사학회

제206회 월례발표회

일시 : 2023년 4월 8일(토) 오후 2~6시
장소 : 한성백제박물관 B2 세미나실

차 례

사회 : 이훈(한림대학교)

제1발표	
최근 제기된 일본인 기원의 3중 구조론에 대해	발표 : 신동훈(서울의대 해부학교실) 토론 : 주홍규(건국대학교)
제2발표	
‘조선 초 조정의 왜구 회유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태조 6년(1397) 항왜 도주와 군관 처벌을 중심으로 -	발표 : 송종호(방송대 대학원) 토론 : 이규철(성신여자대학교)
제3발표	
『한국수산지』의 해도와 일본 해군의 외방도(外邦圖)	발표 : 서경순(부경대학교) 토론 : 김경록(군사편찬연구소)

제1발표

최근 제기된 일본인 기원의 3중 구조론에 대해

발표 : 신동훈(서울의대 해부학교실)

토론 : 주홍규(건국대학교)

【제1주제】

최근 제기된 일본인 기원의3중 구조론에 대해

신동훈(서울의대해부학교실)

대륙으로부터의 이주민이 현대 일본인의 형성에 큰 영향이 있었다는 주장이 처음 제기된 이래 이 주제에 대한 역사학, 고고학, 인류학적 논쟁은 지난 세기 동안 계속 전개되었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외부 이주민이 도작 농경과 함께 일본 열도로 이주하여 수렵 채집 경제로 유지되던 조몽시대를 종식시키고 야요이 시대를 열었다는 주장이다. 조몽과 야요이 시대 사이에 존재하는 뚜렷한 문화적인 단절성, 도작농경의 갑작스런 출현, 조몽인과 야요이인 사이에 보이는 형태학 및 유전학적 이질성 등이 뚜렷하여 이러한 주장은 연구자들 사이에 부분적 이견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관련 학계의 통설로 자리잡고 있다. 이 주장에 의하면 원래 조몽인이 거주하던 일본열도의 서부에 대륙으로부터 도작 농경과 함께 이주한 야요이인이 들어와 자리 잡았고 이후 동일본으로까지 퍼져나가 현대 일본인의 주류가 되었다고 한다. 일본인류학자들은 현대 일본인은 원주민인 조몽인과 이주민인 야요이인의 혼혈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보고 이를 일본인 기원의 2중구조(dual structure of Japanese origin)이라 부르게 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존의 통설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첫째로 야요이연대상향론, 둘째는 유전학적 기법의 발전에 의한 현대일본인 형성이론의 수정이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첫째로 기존에 한국과 일본의 고고학적 발굴보고에 의해 세워진 유적의 편년이 최근 연대추정 기법의 발전에 따라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도작과 관련된 야요이 유적의 연대가 전반적으로 크게 상향 조정 되면서 한반도의 관련 유적도 함께 변화를 맞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의 관련 이론들도 활발하게 재해석 되고 있다고 한다. 둘째는 고인골에 남아 있는DNA의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형태학적 연구에 주로 의존하던 현대일본인의 기원에 대한 통설에 큰 조정이 요구되었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현대일본인 형성의3중 구조론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기존 주장처럼 조몽시대와 그 이후 시대에는 유전적 격차가 여전히 확인되었지만, 야요이시대 이후에도 야요이인과 고분시대 사람 사이에는 유전적으로 매우 다른 경향이 보인다고 한다. 이를 일본인 기원의3중 구조론(tripartite origin of Japanese population)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는 고대부터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전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된 일본인 기원이론은 한국의 역사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인 기원에 대한 여러가지 주장을 종합하여 설명하고 최근3중구조론의 내용과 이러한 주장이 한국사의 해석에도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토론문】

제2발표

‘조선 초 조정의 왜구 회유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태조 6년(1397) 항왜 도주와 군관 처벌을 중심으로 -

발표 : 송종호(방송대 대학원)

토론 : 이규철(성신여자대학교)

‘조선 조정의 왜구 회유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태조 6년(1397) 항왜 도주와 군관 처벌의 배경을 중심으로—

송 종 호*

- | | |
|---------------------------|----------------------|
| I. 머리말 | Ⅲ. 항왜 도주와 군관 처벌의 배경 |
| Ⅱ. 군관 처벌에 관한 사료 및 선행연구 검토 | 1. 제2차 항왜 도주 사건 |
| 1. 항왜 도주 및 군관 처벌에 관한 사료 | 2. 제1차 항왜 도주 사건 |
| 2. 이현종(1959)의 선행연구 검토 | 3. 고려말 항왜 도주 사건과의 비교 |
| 3. 이현종(1959) 이후 선행연구 검토 | Ⅳ. 맺음말 |

I. 머 리 말

조선초 왜구의 퇴조 현상은 1409년(태종9) 무렵부터 현저하게 나타난다.¹⁾ 그 첫 번째 계기는 1396년(태조5) 12월 9일 나가온(羅可溫) 등이 이끄는 대규모 왜구 집단(이하 ‘나가온 왜구’)의 투항이었다.²⁾

이에 관하여 필자는 최근 연구³⁾에서, 조선 조정이 조직한 김사형(金士衡)의 이키·대마도 정벌군이 기동함으로써 이에 위협을 느낀 왜구가 급히 투항한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당시 왜구들의 투항은 무조건적인 투항이 아니라, 자신들의 병력 및 병선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선에 대한 적대행위만을 중지하는 정도의 제한적 투항이었다고 보았다. 조선 조정은 이러한 항왜들을 경계해서 이들을 분리하는 것으로 대응하였으며, 나아가 조선 관군 측이 항왜들에 대하여 최소 2차례 이상 토벌 계획 내지 시도를 하였음을 밝혔다. 이러한 당시 모습으로부터 필자는, “조선초 왜구 투항은 조선 조정의 ‘회유책’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존 통설적 견해⁴⁾에는 그 사료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필자의 위 연구 내용 중 조선 측이 “적어도 2차례 이상 항왜 토벌을 계획 내지 시도하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석사.

1) 송종호, 「조선초 왜구의 퇴조와 조선 조정의 ‘회유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1396년(태조 5년) 나가온 왜구 집단의 투항과 김사형의 이키·대마도 정벌군 출진 간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78, 2022, 251쪽 참조.

2) 같은 논문, 251~252쪽 참조.

3) 같은 논문, 251~297쪽.

4) 기존의 통설적 견해의 내용에 관하여는, 中村榮孝, 「室町時代の日鮮關係」 『日鮮關係史の研究(上)』, 吉川弘文館, 1965, 163~164쪽(原著 1935); 田中健夫, 「倭寇の変質と日鮮關係の展開」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 東京大学出版会, 1959, 14쪽; 李鉉淙, 「朝鮮初期 向化倭人考」 『歴史教育』 4, 1959, 342~343, 345쪽; 田中健夫, 『倭寇と勘合貿易』, 至文堂, 1961, 31쪽; 有井智徳, 「李朝初期向化倭人考」 『村上四郎博士和歌山大学退官記念 朝鮮史論文集』, 開明書院, 1982, 277쪽; 村井章介, 『中世倭人伝』, 岩波新書, 1993, 18~19쪽(이영역, 『중세 왜인의 세계』, 소하, 2003, 28~29쪽); 韓文鍾, 「朝鮮前期 對馬島の 通交와 對日政策」 『韓日關係史研究』 3, 1995, 127쪽; 河宇鳳,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일본과의 관계」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신편 한국사 22)』, 2002, 375~376쪽; 佐伯弘次, 「中世の三島地域と東アジア」, 佐伯弘次 編, 『街道の日本史49: 壱岐・対馬と松浦半島』, 吉川弘文館, 2006, 97쪽 등 참조.

다.”는 부분은 필자가 최초로 제시한 견해였다. 그러나 제한된 지면 사정상, 필자의 위 연구에서는 그 논거들을 매우 간략하게만 언급하였었다.⁵⁾ 그리고 당시 경상도 현지 군관들의 항왜 토벌 시도들이 조선 조정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현지 군관들의 돌발적·독자적 행동이었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었다.

만약 항왜 토벌 시도가 처음부터 조선 조정이 지시했던 것이라면, 이는 기존의 통설적 견해에서 말하는 ‘조선 조정의 회유책’ 주장이 근거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항왜 토벌 시도가 조선 군관들의 독자적 행동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아니면 (필자의 위 연구에서와 달리) 아예 조선 측의 토벌 시도 없이 항왜 스스로 자발적으로 도주했던 것이라면, 당시 조선 군관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기존의 통설적 견해를 뒷받침해주는 사례로도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당시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1396년(태조5) 말부터 1397년(태조6) 초에 있었던 두 차례 항왜 도주 사건에 대하여 조선 조정이 해당 군관들을 처벌하였던 배경을 각각 살펴봄으로써 위 쟁점에 대한 결론을 찾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조선 조정의 군관 처벌에 관련된 자료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그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조선 조정이 해당 군관들을 처벌한 배경을 명확히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기존 통설적 견해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기로 한다.

II. 군관 처벌에 관한 자료 및 선행연구 검토

1. 항왜 도주 및 군관 처벌에 관한 자료

조선초 나가온 항왜 집단의 도주 및 군관 처벌에 관한 일련의 사건들은 1396년(태조5) 12월부터 1398년(태조7) 6월까지 1년 반 남짓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그에 관련된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도 약 30개 항목에 이를 정도로 많다. 본 제1절에서는 우선 『조선왕조실록』과 1397년(태조6) 하륜(河崙)의 『증이부사시서(贈李府使詩序)』⁶⁾의 내용에 근거하여, 당시 2차례 발생한 항왜 도주 및 군관 처벌의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기로 한다.

가. 제1차 항왜 도주 사건

나가온⁷⁾ 왜구 집단은 1396년 12월 9일 조선 조정에 투항했다.⁸⁾ 이 왜구 집단을 이끌던 5명의 왜구 두목 중 구륙(庾六)은 먼저 조선 조정에 입조하여 순종하였지만,⁹⁾ 나가온 등은 같은 달인 12월 하순 무렵¹⁰⁾ 지울주사(知蔚州事) 이은(李殷) 등을 납치하여 일본으로 도주한다

5) 송종호, 앞의 논문, 285~286쪽 참조.

6) 『동문선』 권93 「序」, 「贈李府使詩序」.

7) 한국과 일본의 많은 연구자들은 나가온을, 1417년 대마도주 소 사다시게(宗貞茂)가 죽은 후 대마도 내 최고 실권자가 되는 소다 사에몬타로(早田左衛門太郎)로 보고 있다(田村洋幸, 『中世日朝貿易の研究』, 三和書房, 1967, 224~226쪽; 사에키 고지(佐伯弘次), 「14~15세기 동아시아의 해역세계와 일한관계」, 『제2기 한일역사 공동연구보고서』 3, 2010, 39쪽; 정영현, 「동해안의 왜구와 쓰시마 早田氏」 『한국민족문화』 67, 2018, 222~223쪽 등 참조). 필자도 이에 따른다.

8) 『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 12월 9일 기사;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 4월 2일 갑자; 『동문선』 권93 「序」, 「贈李府使詩序」.

9) 『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 12월 21일 을사; 송종호, 앞의 논문, 282~284쪽 등 참조.

10) 나가온의 도주 시기에 관하여, 『태조실록』 내에서는 권11, 태조 6년(1396) 1월 3일 병진이 초견이다. 그러

(이하 '제1차 사건').¹¹⁾

조선 조정은 제1차 사건과 관련하여 우선 경상도·충청도·전라도·경기우도의 도절제사였던 최운해(崔雲海)·이귀철(李龜鐵)·김빈길(金贇吉)·김영렬(金英烈) 등 4명의 조선 군관들을 처벌한다. 조선 조정은 1397년 2월 18일 이들 4명을 각기 지방으로 유배하고 모두 수군에 편입하였다.¹²⁾ 그리고 6월 17일 다시 이들에게 각기 장형(杖刑) 90~100대를 가하고 직첩도 회수했다.¹³⁾

한편 조선 조정은 4월 12일에 계림부윤 유양(柳亮)의 책임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¹⁴⁾은 『태조실록』의 사료¹⁵⁾ 내용을 근거로 하여, 나가온이 아들 도시로(都時老) 등을 인질로 제공했는데도, 유양이 병을 구실로 나가온 등 항왜와의 접견을 거절하고 그 대신 승려 의운(義雲)을 보냈으므로, 이에 항왜들이 의심을 품고 도주했던 것으로 그 사정을 서술하고 있다. 이후 유양은 6월 9일 병을 이유로 보석되었으나,¹⁶⁾ 이듬해인 1398년 6월 다시 심문을 받고 재산몰수 및 유배형을 받는다.¹⁷⁾

나. 제2차 항왜 도주 사건

1396년 12월 하순 제1차 사건으로 대마도로 도주했던 나가온 왜구는 1397년 4월 1일 조선 조정에 다시 투항한다. 이 때 나가온 등 항왜 10명은 곧바로 상경하여 조선 조정에 입조하지만, 경상도에 잔류한 나머지 왜구들은 다시 도주하였다(이하 '제2차 사건').¹⁸⁾ 『태조실록』에 의하면, 도안무사 박자안(朴子安)이 항왜 토벌을 시도했는데, 항왜들이 이를 깨닫고 도주했다는 취지로 서술되어 있다.¹⁹⁾ 조선 조정은 제2차 사건에 관련한 책임을 물어 5월 18일 박자안을 참형에 처하려 했으나, 그 아들 박실(朴實) 및 정안대군 이방원의 구명 활동으로 참형만은 면해 준다.²⁰⁾ 그 이후 심문 과정을 통하여 경상도 도절제사 윤방경(尹邦慶)과 계림부윤 하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었다.²¹⁾ 이에 따라 6월 17일 박자안은 장형 100대와 유배형 처분을 받고, 윤방경과 하륜은 각기 광주(廣州)와 수원에 안치되었다.²²⁾

2. 이현종(1959)의 선행연구 검토

나 『동문선』 권93 「序」, 「贈李府使詩序」에 의하면 그 시기가 1396년 12월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세종실록』 이에 줄기에도 “[나가온의 도주 시에 이은과 함께 납치된 사실을 서술한 후] 이듬해 2월에 이은과 함께 돌아왔다.”고 되어 있으므로 (『세종실록』 권107, 세종 27년 2월 23일 정묘), 나가온의 도주 시기는 1396년 12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송종호, 앞의 논문, 284쪽 각주 79번 참조)

11)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1월 3일 병진; 1월 28일 신사; 『동문선』 권93 「序」, 「贈李府使詩序」 등 참조.

12)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2월 11일 갑오; 2월 18일 신축.

13)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6월 17일 정유.

14) 아래 본문 제2장 제2절 및 제3절 참조.

15)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1월 28일 신사; 4월 12일 갑오; 5월 2일 계축 등 참조.

16)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5월 2일 계축; 5월 8일 기미; 5월 10일 신유; 6월 9일 기축 등 참조.

17) 『태조실록』 권14, 태조 7년 6월 3일 정미; 6월 20일 갑자;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 4월 2일 갑자.

18)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4월 1일 계미; 4월 6일 무자.

19)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4월 6일 무자. 원문은 아래 각주 32번 참조.

20)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5월 18일 기사; 『정종실록』 권4, 정종 2년 6월 2일 을미.

21)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5월 27일 무인.

22)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6월 17일 정유.

위에 언급된 항왜 도주 및 군관 처벌 사건에 관하여, 중세 한일관계사의 주요 연구자인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栄孝), 다나카 다케오(田中健夫),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 손흥렬, 나종우, 한문종, 하우봉 등은 이를 검토하거나 언급했던 바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²³⁾ 사에키 고지(佐伯弘次)(2010)는 나가온의 투항 및 도주 사실을 모두 언급했지만, 그 사실만을 간단히 서술했을 뿐 그 배경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²⁴⁾ 이렇듯 항왜 도주 및 군관 처벌 사건에 관해서는 예로부터 연구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현종(1959)²⁵⁾은 위 주제에 관하여 가장 이른 시기에, 그리고 가장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으므로, 본 제2절에서는 그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그의 견해는 주요 사료 3개를 포함하고 있어서 전체 내용이 길므로, 이를 세 대목으로 나누어 차례로 살펴본다.

(1) 왜인의 투항시에 있어서의 일어난 것을 보더라도 ...

“... 당초에 항복을 청해 온 왜적이 경상도 울주포에 왔다. 왜적 괴수 나가온이 그의 아들 도시로와 반당(伴黨) 곤시라(昆時羅)를 볼모로 삼아 계림부윤 유양에게 보냈다. 유양이 질병으로 나가 보지 않았더니, 왜적이 스스로 의혹한 나머지 지울주사 이운을 납치하여 도망갔었다. 이때 최운해는 경상도 도절제사, 이귀철은 충청도 도절제사, 김빈길은 전라도 도절제사, 김영렬은 경기도 절제사였는데, ⑥최운해가 영(令)을 어긴 탓으로 <항왜가> 도망하기에 이르렀고, 이귀철·김빈길·김영렬 등도 모두 그 기한에 미치지 못하였다. 5도 도통사 김사형이 이들을 경산부(京山府)에 잡아 가두고서 <이 사실을> 긴급 보고하며 그 죄를 청한 것이었다.” [상계서 태조 6년 2월 신사조 (이상 “<사료1>”²⁶⁾)]

로써 이것은 항왜[들이] 즉 항화하려고 당시 경상도 계림부윤인 유양에게 납질(納質: 인질을 바침)하려 했으나 유양이 병으로 인하여 가지 못함에 왜인들은 자혹(自惑)하여 지울주지사인 이운을 집거(執去: 잡아감)하여 갔으므로 당시 ⑥절제(節制)들의 청죄(請罪: 처벌을 청함)만을 말하고 있거니와

위 인용문(1)은 <사료1>을 제시한 후 그에 대한 해석을 붙이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현종은 <사료1>의 의미를, 항왜들이 계림부윤 유양에게 인질을 보냈는데 유양이 이를 응접하지 않은 탓에 항왜들이 의심을 품고 도주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당시 절제사들을 청죄”한 것이라고 풀고 있다. 그러나 이현종은, 계림부윤 유양의 대처가 미흡하여 항왜들이 도주했는데, 왜 절제사들을 처벌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위 <사료1> ⑥구절에서는, 최운해 등 도절제사 4명이 각기 “영을 어긴 탓으로(違令)” 또는 “기한에 미치지 못하여(不及期)” 처벌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현종의 설명과 같이 항왜들이 스스로 의심을 품고 도주하였다면, 이들 도절제사들이 무슨 영을 어겼는지, 그리고 어떤

23) 中村栄孝, 앞의 책, 141~202쪽; 田中健夫, 「倭寇の変質と日鮮関係の展開」, 1~34쪽; 村井章介, 앞의 책(이영 역, 앞의 책); 孫弘烈, 「麗末・鮮初の對馬島征伐」 『湖西史學』 6, 1978, 111~140쪽; 羅鐘宇, 「韓國中世對日交涉史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韓文鍾, 앞의 논문, 125~172쪽; 河宇鳳, 앞의 논문, 367~410쪽 등 참조.

24) 사에키 고지(佐伯弘次), 「14~15세기 동아시아의 해역세계와 일한관계」, 39쪽 참조.

25) 李鉉淙, 앞의 논문, 343~344쪽. 이현종의 논문에서는 사료 인용을 한문 원문으로만 제시하고 있으나, 독자의 편의상 필자는 이를 국문 번역으로 대체하였다. 인용문 내의 (1), (2), (3), <사료1>, <사료2>, <사료3>의 표시는 필자가 임의로 추가한 것이다.

26)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1월 28일 신사. 「... 初乞降倭至慶尙道蔚州浦, 賊魁羅可溫, 以子都時老、伴儻昆時羅, 納質於雞林府尹柳亮. 亮以疾不往見, 倭自惑, 執知蔚州事李殷逃去. 時雲海節制慶尙, 龜鐵節制忠清, 贊吉節制全羅, 英烈節制京畿右道. ⑥雲海違令, 以致逃逸, 龜鐵、贊吉、英烈皆不及期. 五道都統使金士衡執囚京山府, 馳報請罪. 」

기한을 맞추지 못한 것인지는 쉽게 해명되기 어렵다. 제시된 기본 사료의 문언 자체에 관한 의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항왜 도주의 책임을 유양의 대처 미흡으로 단정한 점은 아쉽다. 즉 사료 해석에서 부정합성의 문제가 보인다.

한편, 위 인용문(1)의 ㉞구절에서 이현종은 “절제사들의 처벌만을 말하고 있다.”는 취지로 서술하고 있다. 이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위 사료에 언급된 “유양이나 항왜에 대해서는 조선 조정이 처벌하려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나 이 점은 모두 사료의 기재 내용과 다르다. 우선 위 제2장 제1절 가.항에서 언급되었듯이, 조선 조정은 유양에 대해서도 유배형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²⁷⁾ 또한 항왜 처벌에 관해서도, 제2차 사건에서 도주했던 항왜 두목 ‘상만호(上萬戶)’에 대해서는, 조선 조정이 박인귀(朴仁貴)를 대마도에까지 보내 대마도주 이대경(李大卿; 소 요리시게(宗頼茂)²⁸⁾)에게 처벌을 요구했던 사실²⁹⁾이 있다. 따라서 조선 조정이 조선의 도절제사들만 처벌하였다는 취지의 ㉞구절 주장은 사료 내용과 어긋난다.

이현종의 견해를 이어서 보자.

(2) 같은 책에 “... 한상질(韓尙質)...은 경상 관찰(慶尙觀察)로 있었고 유양은 계림윤으로 있었다. 양이 상질에게 말하기를, ‘마땅히 사람을 왜인들에게 보내어 화복(禍福)으로 달래어 항복하게 하여야 합니다.’고 하며 승려 의운을 보냈는데, 왜인들이 도망해 돌아갔다...” [상계서 태조 6년 4월 갑오조 (이상 “<사료2>”³⁰⁾)]

로써 앞서 항화하려던 왜인의 도귀(逃歸; 도주하여 돌아감) 건에 대해서 유양과 한상질 간에 생겼던 내용을 알 수 있으며 ㉞그들이 도망했기 때문에 그 사유를 문책하는 것이라 보거나와

이현종은 위 인용문(2) ㉞구절에서 군관들에 대한 처벌은 항왜들이 “도망했기 때문에 그 사유를 문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구절의 의미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인용문(1)과 인용문(2), 그리고 뒤에서 검토할 인용문(3)에서 인용한 모든 사료, 즉 <사료1>, <사료2>, <사료3>이 모두 유양의 행적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현종은 유양의 잘못된 대처로 항왜들이 스스로 의심을 품고 도주하게 되었다는 견해를 갖고 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인용문(1)에서 제기된 의문점, 즉 항왜의 도주가 어떻게 도절제사들에 대한 문책으로 연결되는지의 쟁점은 인용문(2)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이현종의 견해를 이어서 본다.

(3) 같은 책에 “간관이 상소하였는데, 대략은 이러하였다. ‘... 유양이 전에 계림에 있을 때, 왜구가 투항할 즈음에 단기(單騎)로 가서 적을 보고 화복(禍福)으로 달래어, 왜노(倭奴)로 하여금 자식을 볼모로 바치고 정성을 다하게 하였습니다. ㉞마땅히 더욱 부지런히 하고 게으름 없이 그 공

27) 위 본문 제2장 제1절 가.항 참조.

28) 長 節子, 『中世日朝關係と對馬』, 吉川弘文館, 1987, 43~44쪽 참조. 한편 마츠오 히로키는 이대경을 소 사다시게(宗貞茂)라고 보았지만(松尾弘毅, 「中世日朝關係における前期受職人とその変遷」 『전북사학』 35, 2009, 286쪽 각주 20번), 이는 오류이다.

29)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5월 6일 정사. “... 조선국 문화좌정승 조준 등은 일본국 대마도 수호(守護) 이대경(李大卿) 족하(足下)에게 서신을 부치노라. ... 상만호(上萬戶)라는 자는 밀양에 이르러 후하게 잔치하여 호궐하였으니, 저들이 배로 돌아가기를 청하므로 사람을 보내어 호송하였는데, 또 갑자기 의심을 내어 군선(軍船)을 겁박 약탈하고 다시 도망하여 달아났다. ... 저 상만호란 자는 이미 우리와의 약속을 배반하고 또 토주(土主)의 뜻에 위배되었으니, 이것은 우리에게만 죄악이 찬 것이 아니라, 곧 족하의 죄인이다. 마땅히 익히 이해를 헤아려 죄인을 쳐 없애고 화호(和好)를 통하면 다행하겠다.”

30)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4월 12일 갑오. 「... 尙質觀察慶尙, 亮尹雞林. 亮言於尙質: “宜遣人於倭, 誘以禍福, 使之納降.” 乃遣僧義雲, 而倭乃逃歸, ...」

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왜선이 와서 정박한 뒤에 병이 심하다는 핑계로 이해(利害)의 기미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승려 의운을 보내어 의심이 나서 도망하여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 [상계서 태조 6년 5월 계축조 (이상 “<사료3>”³¹⁾)]

로써 투화하려던 왜인의 도망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논란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결국은 ㉔왜인들의 항화에 대해서 보다 더 편의와 최선을 다해준 하나의 증거라 보며 이와 같이 ㉔항화왜인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에 대한 범죄(請罪)는 각도를 바꾸어 생각할 때 항화장려책의 일단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인용문(1)~(3)에 서술된 이현종의 견해를 요약하면, “항왜 도주 사건에 대하여 ① 조선 조정이 도주한 항왜 대신 도절제사들만을 처벌대상으로 했다는 점(위 ㉔구절), ② 조선 조정이 항왜들이 도주하게 된 사유를 물어 군관들을 처벌하였다는 점(위 ㉔구절), ③ 조선 조정이 항왜들에게 편의와 최선을 다하려 했다는 점(위 ㉔, ㉔구절) 등으로 볼 때, 이러한 군관들에 대한 처벌은 결국 ‘항화장려책’, 즉 조선 조정의 ‘회유책’으로 볼 수 있다.(위 ㉔구절)”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㉔구절 주장과 ㉔구절 주장은 그 사료적·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㉔, ㉔구절 주장도 충분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를 조선 조정의 ‘회유책’으로 단정하는 ㉔구절 결론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현종의 위 견해에는 사료 인용 측면에서도 문제가 보인다. 위 인용문(1)~(3)에서 그가 인용한 <사료1> 내지 <사료3>은 모두 제1차 사건에 관한 것이다. 즉 제2차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해서는 제2차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어 온 아래 <사료4>를 볼 필요가 있다.

<사료4> 나가온이 뱃기를 청하니 관찰사가 허락하였다. 나가온이 그의 무리 80명을 거느리고 밀양부에 이르니, 관찰사 이지(李至)가 술과 음식을 먹이고, 나가온 등 10인은 서울로 보내고 나머지는 모두 배로 돌려보냈다. ㉔도안무사 박자안이 군선(軍船)으로 이를 엄습하고자 하니, ㉔왜인이 깨닫고 드디어 달아났는데, 자안이 추격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였다.³²⁾

<사료4>의 밑줄친 ㉔구절에 보듯이, 제2차 사건 관련 사료에는 도안무사 박자안의 항왜 토벌 시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현종이 당시 조선 군관 처벌의 실체를 규명하고 이를 조선 조정의 ‘항화장려책’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제2차 사건과 위 <사료4>도 언급해야 했다. 이러한 사료 인용 및 분석이 누락된 상태에서, 그가 조선 조정의 군관 처벌을 조선 조정의 ‘항화장려책’의 일환으로 단정한 점은 더욱 수긍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3. 이현종(1959) 이후 선행연구 검토

이현종의 위 연구를 제외하고는, 이 시기 조선 군관 처벌의 배경에 관하여 다른 연구는 매우 적다.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한국·일본의 대부분 연구자가 이현종의 위 견해를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시기 항왜 도주 및 군관 처벌에 관하여 명시적인

31)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5월 2일 계축. 「諫官上疏, 略曰: ... 柳亮前在雞林, 當倭寇投降之際, 單騎見賊, 誘以禍福, 使倭奴質子納款, ㉔固當益勤不怠, 以成其功。 及倭船來泊之後, 托以疾篤, 利害之機, 曾不爲慮, 遣僧義雲, 俾生疑貳而逃歸。 ...」

32)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4월 6일 무자. 「羅可溫請見, 觀察使許之。 羅可溫率其黨八十人, 至密陽府, 觀察使李至餉以酒食, 送可溫等十人于京, 餘皆還船。 ㉔都安撫使朴子安欲以軍船掩襲之, ㉔倭覺之遂走, 子安追之不及。」

견해를 밝힌 소수의 연구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³³⁾

[표1] 태조 6년(1397) 항왜 도주 및 군관 처벌 관련 선행연구

	제1차 사건	제2차 사건
이현종(1959)	“유양이 질병으로 나가 보지 않았더니, 왜적이 스스로 의혹한 나머지...”	<언급 없음>
田村洋幸(1967)	“유양은 칭병하고 회견하지 않으면서 승려 의운을 대리로 회견하게 했으므로, 조선측의 신의를 의심한 나가온은 ...”	“박자안 등은 ... 군선으로 투항왜선을 엄습하려 했다. 재빨리 이를 안 왜선에 잔류했던 투항왜들은 ... 도망가 돌아갔다.”
有井智德(1982)	“유양은 ... 병 때문에, 나가온 등과 만날 수 없었으므로 그 대리로서 승려 의운을 파견했다. 이에 대하여 나가온 등은 의심을 품고...”	“박자안은 군선으로 배로 돌아온 왜인을 습격하려 했지만, 왜인이 이를 알아채고 도망갔으므로, ...”
松尾弘毅(2007)	“유양과 길이 엇갈려, 임온은 ... 도주하여...”	<언급 없음>
松尾弘毅(2009)	“유양은 병 때문에 나가온과의 회견에 나가지 않아, ... 의심을 품은 나가온은...”	“[항왜의] 배를 습격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 왜구들은 이 점을 알아채고 도주하여...”
정영현(2018)	“유양이 그들을 만나주지 않자 의심을 품고 ...”	“조선측에서는 ... 잔당을 기습하고자 하였으나, 도주하였다.”

우선 다무라 히로유키(田村洋幸)(1967)는 제1차 및 제2차 도주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모두 명확히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이현종의 서술보다 진전이 있었다. 우선 제1차 사건에 대해서는 유양이 병으로 항왜를 응대하지 않아 항왜가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이현종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제2차 사건에 대해서는 <사료4>의 취지에 따라 박자안에 의한 항왜 토벌 시도를 언급하였다.³⁴⁾ 다무라 히로유키의 이러한 견해는 그 이후 아리이 도모노리(有井智德)(1982), 마츠오 히로키(松尾弘毅)(2009), 정영현(2018)에서도 그대로 계승된다.³⁵⁾

그러나 이들은 모두 『태조실록』 내 관련 내용의 일부(즉, 유양 관련 내용)를 단순 요약하였을 뿐, 도절제사에 대한 처벌 배경 등을 비롯하여 항왜 도주 사건의 전모에 대한 검토로 나아가지 못했다. 즉 이현종의 견해에서 보이는 사료 해석 상의 부정합성 문제는 위 선행연구들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다.

나아가 위 [표1]에 보듯이, 이들은 모두 제2차 사건을, 조선 측이 토벌 시도를 하였으나 그

33) 李鉉淙, 앞의 논문, 343~344쪽; 田村洋幸, 앞의 책, 104~105쪽; 有井智德, 앞의 논문, 278~279쪽; 松尾弘毅, 「朝鮮前期における向化倭人」 『史淵』 144, 2007, 33쪽; 松尾弘毅, 「中世日朝關係における前期受職人とその変遷」, 285~286쪽; 정영현, 앞의 논문, 225쪽 참조.

그 외에 근래에 이명훈(2017), 이태훈(2021)도 항왜 도주 또는 군관 처벌에 관하여 언급한 바 있다. 우선 이명훈은 “국방 책임자[도절제사 4명]에 대한 처벌은 엄중했다. ... 이처럼 무거운 처벌에서 우리는 조선 건국으로부터 불과 4년이 지난 1396년에 발생한 피랍사건이 국가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만 서술하고 있다(이명훈, 「李藝 관련 왕조실록의 誤記」 『韓日關係史研究』 57, 2017, 227~228쪽). 그러나 그는 군관 처벌의 배경에 관하여는 검토하지 않았다.

이태훈도 “변장의 초기 대응이 부적절하여 왜구를 놓치고 말았다.”고만 언급하고 있는데(이태훈, 「14세기 후반 대일 외교사절로 본 한일관계」 『조선통신사연구』 32, 2021, 101~102쪽), 이 표현만으로는 항왜 도주 내지 군관 처벌의 배경에 관한 그의 견해를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리고 그는 위 문장에 이어서 “그래서 [김사형의 이키·대마도 정벌군]이 왜구 선단을 포획함으로써 원정이 중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는데(같은 논문, 102쪽. 밑줄은 필자가 임의로 추가한 것임), 이는 사료에 보이지 않는 내용이고, 또한 이 “왜구 선단”이 “도주한 항왜”를 의미하는지 여부도 문장 상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34) 田村洋幸, 앞의 책, 66~67, 104~105쪽 참조.

35) 有井智德, 앞의 논문, 278~279쪽; 松尾弘毅, 「朝鮮前期における向化倭人」, 33쪽; 松尾弘毅, 「中世日朝關係における前期受職人とその変遷」, 285쪽; 정영현, 앞의 논문, 225쪽 참조.

실행 이전에 항왜들이 이를 알아채고 도주한 것으로 서술함으로써, 마치 조선 측의 토벌 계획은 실행되지 않은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사료4> ⑥구절의 “[박]자안이 추격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였다.”는 표현에서 보듯이, 당시 조선 측의 토벌 시도는 실제로 실행된 것이었다. 따라서 위 연구자들의 사건 서술은 관련 사료에 나타난 조선 측의 실제 행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다고 보인다.

요컨대, 오늘날까지도 한국·일본의 연구자 대부분은 항왜 도주 및 군관 처벌 사건 자체에 무관심하거나, 또는 이현종(1959)의 연구처럼 항왜 도주 사건을 계림부윤 유양의 대처 미숙에서 유발된 것으로 보면서, 그로 말미암은 군관 처벌을 조선 조정의 ‘왜구 회유책’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제2차 사건에 관하여 다무라 히로유키, 아리이 도모노리, 마츠오 히로키, 정영현 등 소수의 몇몇 연구자들만이 박자안의 항왜 토벌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그 내용을 축소하여 언급하는 수준일 뿐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선행연구들은 모두 제1차 사건 및 제2차 사건에 관한 주요 사료의 문언을 충실히 해명하는 데에도 미흡한 수준으로 보인다. 또한 항왜 도주 사건 연구에 대한 관심을 주로 제1차 사건에만 둠으로써, 이 시기 항왜 도주 사건의 성격을 충분히 규명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1차 사건 및 제2차 사건 양측 모두에 동등한 비중을 두고, 당시 도주 사건의 배경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Ⅲ. 항왜 도주와 군관 처벌의 배경

본 제3장에서는 먼저 1397년(태조6)에 있었던 두 차례 항왜 도주 사건 및 조선 군관 처벌의 실제 모습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당시 항왜 토벌 시도의 주체를 규명하고자 한다. 논의의 편의상, 우선 제2차 사건을 먼저 검토한 후(제1절), 제1차 사건의 검토로 넘어간다(제2절). 이를 토대로 고려말 왜구 등경광(藤經光) 도주 사건과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1397년 항왜 토벌 시도 및 항왜 도주 사건의 성격을 정리하기로 한다(제3절).

본 연구 이하 부분에서 살펴볼 주제는 “항왜들은 무슨 이유로 도주하였는가?” 또는 “조선 군관이 처벌된 죄목은 무엇이었는가?”라고도 표현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갈래의 견해가 가능하다.

- ① 항왜자발의혹설(제1설): “조선 측의 토벌 계획은 없었으며 항왜들이 스스로 의심을 품고 도주했는데, 조선 군관이 이를 추격하는 데 실패했다.”
- ② 군관독자토벌설(제2설): “현지의 조선 군관이 공훈을 올리기 위한 욕심 등으로 독자적으로 항왜 토벌을 계획하였는데, 그 시행 이전에 항왜들이 이를 알아채고 도주했다(또는 독자적으로 토벌을 시도했는데 실패하고, 그 결과 항왜들이 도주했다).”
- ③ 조정보벌지시설(제3설): “조선 조정이 현지 군관들에게 항왜를 토벌하라고 지시했으나 그 계획 중에 항왜들이 이를 알아채고 도주했다(또는 조선 군관들이 그 지시에 따라 토벌을 시도했는데 실패하고, 그 결과 항왜들이 도주했다).”

이하에서는 위 3가지 학설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1. 제2차 항왜 도주 사건

1397년 4월 1일 나가온은 왜구 선박 24척을 이끌고 두 번째로 조선 조정에 투항하였다. 제2차 도주 사건은 그로부터 5일 후인 4월 6일에 있었다. 제2차 사건으로 처벌 받은 군관은 도안무사 박자안, 경상도 도절제사 윤방경, 계림부윤 하륜 등 3명이다.³⁶⁾ 이 중 제2차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적을 사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박자안뿐이므로, 본 제1절에서의 검토는 박자안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2차 사건의 전말과 박자안의 처벌에 관한 사료로서는, 위 제2장에서 언급된 <사료4> 이외에,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아래 <사료5>도 살펴본다.

<사료4(부분)> ... 도안무사 ㉔박자안이 군선(軍船)으로 이를 엄습하고자 하니, 왜인이 깨닫고 드디어 달아났는데, ㉔자안이 추격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였다. (제2장 제2절에서의 인용문의 일부를 다시 제시함)

<사료5> 순군 천호(巡軍千戶) 한을기(韓乙氣)를 보내 박자안을 군중(軍中)에서 참수하도록 하였다. 그 때에 ㉔자안은 왜적을 쫓아 바야흐로 전라도 진포에 이르렀었다. ㉔그 일은 그 적들을 범하는(건드리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비밀로 하고 선포하지 않았으니, 바깥 사람들이 이를 알 수 없었다. 그 아들 박실(朴實)이 ... 울며 아버지의 목숨을 살려주기를 청하니, ... 전하[정안대군 이방원]가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겨 여러 종친과 함께 예결하여 청하게 하자 하니, 여러 종친이 말하였다. ㉔“이것은 국가의 기밀 사안인데, 임금께서 만일 어디서 아셨느냐고 물으면, 무슨 말로 대답하시겠습니까?” ...

전하가 ... 예결하여 내관 조순(曹恂)을 시켜 계청(啓請)하게 하니, 순이 말하였다. ㉔“이것은 비밀 사안인데 여러 종친이 어떻게 아셨습니까?” 전하가 말하였다. “사람을 벌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라의 큰 일인데, 바깥 사람이 어찌 알지 못 할 리가 있겠는가?”

순이 들어가 아뢰니, ㉔임금[태조]께서 처음에 듣고 노하여 말하였다. “너희들은 자안(子安)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후 임금의 명으로 박자안은 참형을 면하였다.]³⁷⁾

위 두 사료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 두 사료 모두에서 도안무사 박자안의 항왜 토벌 시도를 엿볼 수 있다. 특히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서술된 바와는 달리,³⁸⁾ 박자안의 항왜 토벌은 계획 수준에 머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에 옮겨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사료4>를 보면, ㉔구절 및 ㉔구절로부터, 박자안이 군선으로써 항왜들을 토벌하려 했고, 이들이 도주하자 이를 추격한 모습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

다음으로 <사료5>에서는 ㉔구절에서 박자안의 추격 활동이 더욱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㉔구절에서는 그 원문 「以事干彼賊，秘而不宣。」의 해석이 문제이다.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조선왕조실록』 번역본에는 “일이 저 적에 관계되므로 비밀히 하고 선포하지 않으니”로 번역되어 있다.³⁹⁾ 그러한 해석이라면 위 문장의 전체적인 취지는 “박자안이 항왜를 추격하였는데, 이 일은 왜구와 관련된 일이므로 비밀로 했다.”가 된다. 그러나

36)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5월 27일 무인; 6월 17일 정유.

37)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5월 18일 기사. 「遣巡軍千戶韓乙氣，斬朴子安于軍中。㉔時子安追倭賊，方至全羅道鎭浦，㉔以事干彼賊，秘而不宣，外人莫得知之。其子實... 涕泣請活父命，... 殿下心傷之，欲與諸宗親，偕詣闕以請。諸宗親曰：“㉔此國家秘事也。上若問從何得知，則何辭以對?” ... 殿下... 詣闕，令內官曹恂啓請之。恂曰：“㉔此秘事也。諸宗親何得知之?” 殿下曰：“刑人殺人，國之大事。外人豈有不知之理乎?” 恂入啓。㉔上初聞之，怒曰：“汝等以子安爲無罪乎?” ...」

38) 위 본문 제2장 제3절 참조.

39) https://sillok.history.go.kr/id/kaa_10605018_001.

왜구에 관련된 일을 모두 비밀로 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그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干」의 의미에 관하여 『설문해자』에서는 「干, 犯也.」, 즉 “干”은 ‘범하다’는 뜻이다.”로 풀고 있다.⁴⁰⁾ 즉 위 원문 부분은 “그 일은 그 적들을 범하는(건드리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비밀로 하고 선포하지 않았다.”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러한 번역에 따르면, <사료 5> ㉑구절에서도 박자안의 항왜 토벌 시도가 표현되어 있다고 보인다.

둘째, <사료5>로부터 당시 조선 측의 항왜 토벌 시도가 조정 내에서도 매우 은밀히 진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㉑구절 외에도, ㉒구절, ㉓구절 모두에서, 박자안의 항왜 토벌 시도는 왕자 등 종친에게도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극히 은밀한 행위였다.

만약 박자안의 토벌 시도가 그의 독자적인 행위였다면(군관독자토벌설(제2설)), 조선 조정의 입장에서 지방 일개 군관의 돌발적 일탈 행위 또는 군령 위반 행위를 왕자 등 종친에게까지 비밀로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그보다, 조선 조정이 항왜를 토벌하고자 계획하고 시도하는 것(조정토벌지시설(제3설))은 그 사안의 성격상 당연히 비밀이 유지되었어야 할 사항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그러한 조정의 지시에 따라 행해진 박자안의 항왜 토벌 시도가 실패한 일 역시 비밀로 유지될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조선 조정이 박자안에게 일단 참형 결정을 내린 점, 그리고 국왕 태조가 박자안의 유죄를 강하게 주장한 점(<사료5> ㉒구절)도, 조선 조정의 항왜 토벌 의지가 매우 강력했던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점에서 제2차 사건은, 조선 조정이 항왜 토벌을 박자안에게 지시하여 박자안이 이를 준비하였지만, 그러한 움직임을 항왜가 미리 포착하여 도주하였고, 이를 박자안이 추격하다 놓쳤던 것으로 파악된다(조정토벌지시설(제3설)).

셋째, 조선 조정이 항왜들에 대한 토벌 시도를 비밀로 유지했다는 점은, 그 당시 조정 내에서도 이를 알았던 사람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조선초 시기 왕실 종친은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 영삼사사(領三司事), 도절제사 등 조정 내 주요 관직을 맡고 있었다.⁴¹⁾ 따라서 항왜 토벌에 관한 사항이 이들 왕실 종친에게까지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항왜 토벌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안은 조정 내에서의 공론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기보다는 국왕 태조 및 극소수의 문무 관리 사이에서만 논의되고 시행되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조선왕조실록』이나 기타 관련 자료를 통하여 항왜 도주 사건을 기록한 사람들 역시 조선 조정에 의한 항왜 토벌 시도가 있었음을 몰랐거나, 또는 알았더라도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은 제1차 사건에 관한 자료들에서 보이는 불명확성 내지 모호성의 원인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1차 사건의 배경 파악을 위한 자료 검토에서는, 그 문언에 대한 문리해석에 더

40) 『설문해자』. 「干」의 용례 중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주로 ‘막다, 요구하다, 범하다, 간여하다, ~에 관계되다.’는 등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는 각기 『조선왕조실록』 내에서 많은 용례를 보인다. 이 중에서 ‘왜적들을 ~하여 이를 비밀로 했다.’는 문장과 어울리는 용례는 ‘범하다’라는 의미뿐이다.

참고로 『조선왕조실록』 중 조선초에 해당하는 자료들 중에서 「干」이 ‘범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법령을 범하다.’ 또는 ‘죄를 범하다.’의 용례가 주로 많이 보인다(‘법령’의 경우는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4월 12일 갑오; 『정종실록』 권1, 정종 1년 1월 9일 경신; 2월 1일 임인; 5월 21일 경인 등; ‘죄’의 경우는 『정종실록』 권2, 정종 1년 8월 8일 을사; 권3, 정종 2년 4월 18일 계축 등). 그 외 ‘범하다’의 대상이 된 것으로는 “화기(和氣)”(『정종실록』 권4, 정종 2년 12월 22일 임자;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윤5월 5일 경신), “두 국구(兩國舅)”(『태종실록』 권10, 태종 5년 8월 14일 정축), “임금의 총기(天聰)”(『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 3월 12일 신묘) 등이 있었다.

41) 예컨대,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8월 7일 병진; 권4, 태조 2년 10월 17일 기축; 권11, 태조 6년 4월 21일 계묘; 권15, 태조 7년 9월 1일 계유; 『정종실록』 권1, 정종 1년 1월 19일 경인; 6월 1일 경자; 권4, 정종 2년 4월 6일 신축 등 참조.

하여, 그 문언 뒤편에 있는 당시 주변 상황까지를 고려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고자 한다.

2. 제1차 항왜 도주 사건

제1차 사건은 1396년(태조5) 12월 9일 조선 조정에 투항했던 나가온 등 왜구들이 그 달 하순에 울주지사 이은 등을 납치하여 일본으로 도주했던 일을 말한다. 제1차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된 군관은, 최운해·이귀철·김빈길·김영렬 등 도절제사 4명 및 계림부윤 유양이었다. 이하에서는 ① 최운해 등 도절제사 4명에 대한 처벌 및 ② 계림부윤 유양에 대한 처벌의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최운해 등 도절제사 4명 처벌

우선 도절제사 4명이 처벌된 죄목에 관해서는 앞에서 보았던 <사료1>의 해당 부분을 다시 본다.

<사료1(부분)> ... 최운해가 영(令)을 어긴 탓으로 <항왜가> 도망하기에 이르렀고, 이귀철·김빈길·김영렬 등도 모두 그 기한에 미치지 못하여, 5도 도통사 김사형이 ... 그 죄를 청한 것이었다. (제2장 제2절에서의 인용문 일부를 다시 제시함)

위 <사료1>의 밑줄친 구절은 기존의 통설적 견해에서 간과되었던 부분이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명확히 최운해가 “영을 어긴 탓으로(違令) <항왜가> 도망하기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고, 또한 나머지 3명의 절제사에 대해서는 “기한에 미치지 못했다.(皆不及期)”는 점을 책망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최운해가 어긴 “영(令)”은 무엇이였을까? 일단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상부의 명령, 즉 조정의 명령 내지 지시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목되지 않던 『태종실록』 중 유양 졸기(<사료6>)를 보자.

<사료6> [나가온 등 왜구가 항복하자] 유양이 즉시 항복한 왜인의 사자(使者) 10인을 데리고 김사형의 막사로 갔다. 김사형이 왜선을 울산포에 머물러 두고, 바로 왜사(倭使)를 조정에 보냈다. 양미(糧米)를 후하게 주어 <항왜들을> 위로하고 회유하도록 명하고, ㉔은밀히 변장(邊將)을 시켜 그들을 섬멸하게 하였는데, ㉕병선을 징발하여 아직 모이지 않았으므로, 적이 떠도는 말(飛語)을 듣고 마침내 울산군사 이은과 아전 1명, 기생 1명을 붙잡아서 갔다.⁴²⁾

<사료6> ㉔구절에 따르면, 정벌군을 이끄는 5도 도통사 김사형이 변장들, 즉 도절제사들에게 항왜를 섬멸하도록 명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나아가 ㉕구절에서는 이들이 기한을 맞추지 못했던 이유가 토벌에 필요한 병선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였던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사료6>에 의하면, 최운해가 어긴 “영”이란, 조선 조정이 김사형을 통하여 최운해 등 도절제사들에게 항왜 토벌을 명하면서 병선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던 것을 의미한다.

42)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 4월 2일 갑자. 「... 亮卽率降倭使者十人, 赴士衡幕, 士衡留置倭船于蔚山浦, 乃送倭使于朝, 命厚贈糧米慰諭之. ㉔密使邊將殲之. ㉕徵兵船未集, 賊聞飛語, 遂執蔚山郡事李殷吏一妓一以去. 」

또한 위 <사료1>에서 이귀철 등이 “그 기한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 대목과 관련해서도, <사료6>에 따르면 “그 기한”이란 병선을 징발하여 토벌 준비를 마치는 기한을 의미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귀철 등 3명의 도절제사는 그러한 기한에 맞추어 병선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영을 어긴” 최운해의 경우를 다시 보면, 그는 병선 징발 등 토벌 준비를 모두 마쳤으나 정작 그 기일에 토벌에 나서지 않아 영을 위반하였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토벌 준비가 너무나도 미흡하여 아예 토벌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조선 조정이 판단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두 경우 모두 최운해는 나머지 3명보다 무거운 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은 ① 도절제사 4명에 대한 장형 처벌에서도 최운해의 경우는 100대, 이귀철 등 나머지 3명에게는 90대가 가해진 점⁴³⁾, ② 이듬해인 1398년(태조7) 도절제사 4명에 대한 사면이 있었을 때 국왕 태조가 여전히 최운해에 대한 사면은 잘못된 것으로 평가했던 점⁴⁴⁾ 등으로도 뒷받침된다.

요컨대 제1차 사건에서는, 조선 조정이 김사형을 통하여 도절제사 4명에게 항왜 토벌을 명하였으나, 도절제사들은 병선 조달 등 토벌 준비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조정토벌지시설(제3설)). 이렇게 토벌 준비가 미흡했던 상황이 어떠한 과정으로 항왜 도주로 귀결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래 나.항에서 살펴본다.

나. 계림부윤 유양 처벌

제1차 사건 후 계림부윤 유양에 대한 처벌은 도절제사 4명에 대한 처벌보다 뒤늦게 이루어졌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아래 유양 졸기의 기록(<사료7>)에서 보듯이 당시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정도전 일파의 참소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사료7> [위 <사료6>(제1차 사건의 발생)에 이어서] 정권을 잡은 재[정도전]가 유양이 사주한 것이라고 하여 헌사(憲司)로 하여금 핵문(劾問)하게 하였는데, 태조가 죄를 벌하지 말라고 명하여 합산(合山)으로 귀양 가는 데 그쳤다. 정권을 잡은 자가 분을 풀 길이 없어 다시 체포하여 국문(鞫問)하기를 청하여, 옥에 갇힌 지 여러 달 동안에 고문이 갖추 이르렀다. 우리 전하[정안대군 이방원]께서 그가 굴복당하는 것을 불쌍하게 여겨, 틈을 타서 태조에게 극언하니, 감오(感悟)하여 놓아주고 나주에 안치하라고 명하였다.⁴⁵⁾

위 <사료7>에는 유양의 처벌 여부에 관하여 당시 정도전 일파와 정안군 이방원 일파 간에 의견 대립이 있었던 점이 확인된다. 그러나 어쨌든 유양이 유배형을 받은 점에서 볼 때, 그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사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유양은 조선 조정으로부터 직접 항왜 토벌 임무를 하명받은 적이 없었는데, 과연 그의 죄목은 무엇이었을까? 이에 관해서는 앞에서 언급된 <사료2>와 <사료3>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43)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6월 17일 정유.

44) 『태조실록』 권14, 태조 7년 5월 17일 계해; 윤5월 26일 신축. 이 두 사료에는 김빈길의 사면에 대해서만 언급이 없다. 그러나 1400년(정종2) 그가 전라도 수군절제사로 복귀하여 있는 것으로 보아(『정종실록』 권4, 정종 2년 6월 2일 을미), 그도 그 이전에 사면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5)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 4월 2일 갑자. 「... 柄用者謂亮嗾之, 使憲司劾問, 太祖命勿治, 止配合山. 柄用者憤無所洩, 復請逮問, 繫獄數月, 拷掠備至. 我殿下愍其見屈, 乘間極言, 太祖感悟得釋, 命於羅州安置.」

<사료2(부분)> ... ㉔[유양]이 [한상질]에게 말하기를, “마땅히 사람을 왜인들에게 보내어 화복(禍福)으로 달래어 행복하게 하여야 합니다.”하며, ㉕승려 의운을 보냈는데, 왜인들이 도망해 돌아갔으므로, ... (제2장 제2절에서의 인용문의 일부를 다시 게시함)

<사료3(부분)> ... 유양이 전에 계림에 있을 때, ㉔왜구가 투항할 즈음을 당하여 단기(單騎)로 가서 적을 보고 화복으로 달래어, 왜노(倭奴)로 하여금 자식을 볼모로 바치고 정성을 다하게 하였습니다. 마땅히 더욱 부지런히 하고 게으름 없이 그 공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왜선이 와서 정박한 뒤에 ㉕병이 심하다는 핑계로 이해(利害)의 기미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승려 의운을 보내어 의심이 나서 도망하여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제2장 제2절에서의 인용문의 일부를 다시 게시함)

<사료3> ㉔구절 등에도 언급되었듯이, 유양은 나가온 왜구의 투항에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⁴⁶⁾ 따라서 그는 항왜들이 조선 조정에 진심으로 귀순하여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료2> ㉔구절 및 <사료3> ㉔구절에 의하면, 그러한 유양이 파견한 승려 의운이 항왜를 접견한 후, 항왜들이 오히려 의심을 품고 도주했다고 한다. 이 구절들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이 쟁점은 <사료2> ㉔구절에 있듯이, 유양이 “왜인들을 화와 복으로 달래어(誘以禍福) 이들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점으로부터 해명된다. 즉 위 인용문 중 “화와 복으로 달래어”는 “귀순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과 귀순하는 경우의 이익을 두루 설명함으로써 항왜들을 달래어”라는 의미로 풀 수 있다. 유양은 의운을 파견하면서 그에게 항왜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알려주었는데, 그 내용에는 협박과 회유, 양면의 내용이 모두 있었다고 추론된다.

그러면 의운이 항왜들에게 전달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였을까? 이에 관하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주목되지 않던 『세종실록』 중 이에 즐기(<사료8>)와 하륜의 『증이부사시서』(<사료9>)의 기록을 살펴보자.

<사료8> [나가온 왜구가] 행복을 청하므로, 경상도 감사가 지율산군사(知蔚山郡事) 이은을 시켜서 관(館)에서 접대를 맡아보게 하고 사실을 갖추어서 위에 알리니, ㉔조정의 의논이 분분하여 오랫동안 결정짓지 못하고 있었다. ㉕동래 승려가 왜적에게 이르기를, “관군이 물과 육지에서 양쪽으로 공격하려고 한다.”고 하니, 왜적이 그 말을 믿고 노하여 [이은]과 및 전 판사(判事) 위충(魏種)을 사로잡아 가지고 돌아갔다...⁴⁷⁾

<사료9> ... 12월에 적이 남포(南浦)에 이르니 이군(李君)[지율주사 이은]은 후하게 대접하였다. 5일 만에 적의 넷째 괴수가 그 무리를 이끌고 이군이 있는 곳에 와서 배에 나가 술을 마시자고 간청하였다. 이군이 이윽고 이들과 함께 가니, 적의 무리들이 에워싸고 갑옷을 입고 칼을 빼어 위엄을 보이며 그에게 묻는 말이, “<우리를> 행복하라고 꼬여 깊은 곳으로 몰아넣고 물과 육지에서 양쪽으로 공격하려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고 하였다...⁴⁸⁾

46) 『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 12월 9일 기사;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 4월 2일 갑자; 『동문선』 권93 「序」, 「贈李府使詩序」 등 참조.

47) 『세종실록』 권107, 세종 27년 2월 23일 정묘. 「... 倭賊...請降, 慶尙道監司令知蔚山郡事李殷主其館待, 具事以聞, ㉔朝議紛紜久未決. ㉕有東萊僧謂倭曰: “宜軍欲水陸挾攻.” 倭信而怒之, 虜殷及前判事魏種而還. ...」

48) 『동문선』 권93 「序」, 「贈李府使詩序」. 「... 十二月寇至南浦, 李君接以厚. 居五日, 其第四魁者率其衆至君所, 固要就船飲. 君遂與之往, 則寇衆環立, 皆被甲露刃凜凜如也. 乃問之曰: 誘降深入, 而欲水陸挾攻何也? ...」

<사료8> ㉔구절의 “동래 승려”는 의운을 의미한다. 의운은 항왜들이 조선에 귀순하지 않는 경우 관군이 수륙 양면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조정이 지시한 항왜 토벌 계획이 실제로 준비 중이었으므로,⁴⁹⁾ 의운의 설명은 단순한 과장이나 허세가 아니라 구체적인 위협으로 항왜들에게 전달되었을 개연성도 크다. 물론 의운은 유양이 지시한 대로, 항왜들이 조선에 귀순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설명했겠지만, 항왜들은 조선 관군이 구체적인 토벌 계획을 갖고 있다는 대목에서 놀라며 분노했을 것이다. 그 결과 <사료9>의 밑줄친 부분처럼, 항왜들은 지율주사 이은에게 “이미 투항한 자신들을 왜 토벌하려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그를 납치하여 도주하기에 이른다.⁵⁰⁾

즉 유양에 대한 처벌은 그가 파견한 승려 의운이 항왜에게 경솔한 언행을 했던 일에서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양의 죄책과 처벌 수준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의운을 체포하여 그 정황에 관한 명확한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었다. 이 당시 승려 의운이 도주하여 자취를 감추었고, 그로 인하여 유양에 대한 심문 및 처벌이 1년 동안 연기되었던 사정⁵¹⁾은 이러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쉽게 이해된다.

제1차 사건의 전말을 다시 요약하자면, 조선 조정이 김사형을 통해 도절제사들에게 항왜 토벌을 준비하도록 하였는데, 그러한 토벌 계획이 유양이 파견한 승려 의운에 의하여 의도치 않게 항왜들에게 미리 누설되어 항왜들이 도주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조정토벌지시설(제3설)).

3. 고려말 항왜 도주 사건과의 비교

본 제3절에서는 고려말에 해당하는 1375년(우왕원) 왜구 등경광(藤經光)의 도주 사건을 살펴보고, 이를 1397년 나가온 항왜 도주 사건과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가. 등경광 왜구 집단의 고려 조정에 대한 투항 양상

우선 등경광 도주 사건에 관하여 『고려사』(<사료10>) 및 『고려사절요』(<사료11>)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료10> 우왕 초에 왜인 등경광이 그 ㉔무리들을 이끌고 와서 장차 들어가 도적질할 것이라 말하고 공갈하며 식량을 요구하였다. 조정에서 의논하여 ㉔<왜구들을> 순천(順天)·연기(燕岐) 등에 나누어 거처하게 하고 ㉔관에서 재물과 식량을 지급하였다. 곧이어 ㉔밀직부사(密直副使) 김세

49) <사료8> ㉔구절에서 “조정의 논의가 분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무슨 사안에 관한 논의였는지 등의 측면에서 그 의미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토벌을 시행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왕 태조 및 극소수 문무 관리 간의 논의에서 이미 결정되었을 것이므로(위 본문 제3장 제1절 참조), 조정의 공론이 분분하였다는 사실은 그리 중요한 쟁점은 아니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또한 <사료8>은 1445년(세종27)에 이예가 죽자 그에 관한 졸기에 기재된 것으로서, 실제 그 사건이 있었던 1397년으로부터는 거의 50년 후에 글로 옮겨진 내용이다. 더욱이 『세종실록』이 성립된 것은 1454년(단종2)이므로 그 시기적 간극은 더욱 벌어진다. 따라서 ㉔구절의 내용을 크게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50) 이와 관련하여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1월 3일 조에는 “왜구 괴수 상전어중(相田於中)[나가온] 등이 그 무리를 이끌고 울주포로 들어온 것을 지주사 이은이 식량을 주고 후히 접대하였더니, 상전 등은 <도리어> 꺾어서 함몰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다. (‘상전어중’을 나가온과 동일인으로 본 점에 관하여는, 田村洋幸, 앞의 책, 66~67, 104쪽; 정영현, 앞의 논문, 221~223쪽 등 참조) 이것은 위 <사료8> 및 <사료9>와 같은 정황을 생략하고 항왜들의 반응만을 기재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위 사료만으로 항왜들의 도주를 항왜자발의혹설(제1설)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51)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5월 2일 계축; 5월 8일 기미; 권13, 태조 7년 6월 3일 정미 참조.

우(金世祐)를 보내어 김선치(金先致)에게 <왜구들을> 유인하여 죽이라고 일렀다. 김선치가 술과 음식을 크게 차려놓고 먹이면서 죽이려고 하였다. ㉔모의가 누설되어 경광이 그 무리를 이끌고 바다로 나가 떠나버렸는데, 겨우 3명만 붙잡아 죽였다. ㉕선치가 죄를 받을까 두려워하여 70여 명의 목을 베었다고 거짓으로 보고하였다가 일이 발각되어 수졸(戍卒)로 편제되어 배치되었다. [고려사]52)

<사료11> 왜인 등경광이 ㉔무리를 이끌고 와서 투항하였다. <고려 조정은> 이들을 ㉕순천·연기 등에 거처하게 하고 ㉖관에서 재물과 식량을 지급하였다.53) ... 전라도원수 ㉔김선치에게 등경광을 유인하여 죽이라고 일렀다. 김선치가 술과 음식을 크게 차려놓고 음식을 먹이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㉕계획이 누설되다가 누설되어 등경광이 그 무리를 이끌고 바다로 나가 떠나버렸는데, 겨우 3인만 붙잡아 죽였다. ㉕선치가 죄를 받을까 두려워하여 70여 명의 목을 베었다고 거짓으로 보고하였다가 일이 발각되어 수졸로 편제되어 배치되었다. [고려사절요]54)

먼저 등경광이 고려 조정에 접촉해 온 사건의 성격을 정리해 보자. 『고려사절요』에 의하면 등경광은 “와서 투항했다(來投)”라고만 간단히 기재되어 있다(<사료11> ㉔구절). 반면 『고려사』에 의하면 등경광은 고려 조정에 대하여 침구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식량을 요구해 왔다고 한다(<사료10> ㉔구절). 이와 같이 등경광의 행위 하나에 대하여 고려 조정이 ‘투항’과 ‘침구 위협’이라는 극도로 상반된 의미로 파악하였던 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쟁점에 관해서는 조선초 나갔온 왜구 투항의 모습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우선 나갔온 왜구가 1396년 12월 9일 조선 조정에 먼저 접근하여 투항을 제안한 점은 등경광이 고려 조정에 먼저 접촉해 온 점과 같은 모습이다. 이 때 나갔온 조선 조정에게 “저희가 항복하고자 하오니, 만일 귀국에서 변방 한 곳을 허급(許給)하고 또 식량을 주시면, 저희가 감히 다른 마음을 갖지 않을 것이며...”라고 말하고 있는데, 55) 여기에도 투항 제안과 토지·식량 요구가 모두 들어있다. 나아가 나갔온 왜구가 생각했던 투항은 자신들에 대한 모든 처분권을 조선 조정에 맡긴다는 무조건적인 투항이 아니었다. 단지 조선에 대하여 적대적인 행위만을 중지한다는 의미에서의 제한적인 투항이었고, 따라서 자신들의 병력 및 병선들에 대한 통제권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였다.56)

따라서 『고려사』 및 『고려사절요』가 등경광 왜구의 메시지를 ‘투항’과 ‘침구 위협’이라는 일견 상반되는 의미로 표현하였던 것은 모순이나 오류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이 두 사료는 고려말부터 조선초까지 왜구들이 고려·조선 조정에 투항을 제안해 올 때 보여준 양면적인 모습을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 즉 등경광 왜구 집단은 고려 조정에 ‘투항’한다고 하면서, 만약 재물과 식량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다시 침구 활동에 나서겠다는 위협도 함께 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고려말 등경광 왜구의 투항 양상은 조선초 나갔온 왜구의 투항 양상과 같았던 것이다.

52) 『고려사』 권114, 열전 권27, 제신, 김선치. 「辛禠初, 倭藤經光㉔率其徒來, 聲言將入寇恐愾之, 因索糧. 朝議㉕分處順天·燕岐等處, ㉖官給資糧, 尋㉔遣密直副使金世祐, 諭先致誘殺. 先致大具酒食, 欲因餉殺之, ㉕謀洩, 經光率其衆, 浮海而去, 僅捕殺三人. ㉕先致懼罪, 詐報斬七十餘人, 事覺, 編配戍卒. ...」

53) 『고려사절요』 권30, 신우1, 우왕 1년 5월. 「倭藤經光㉔率衆來投. ㉕處之順天燕岐等處, ㉖官給資糧. 」

54) 『고려사절요』 권30, 신우1, 우왕 1년 7월. 「㉔諭全羅道元帥金先致誘殺藤經光. 先致大具酒食, 欲因餉殺之, ㉕謀緩而泄, 經光率其衆, 浮海而去, 僅捕三人殺之. ㉕先致懼罪, 詐報斬七十餘級, 事覺, 編配戍卒. ...」

55) 『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 12월 9일 기사. 「... 吾等欲降, 若許貴國邊地一處, 又給食糧, 則我等無敢有二心, ...」

56)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4월 6일 무자; 송종호, 앞의 논문, 290~292쪽 참조.

나. 등경광·나가온 왜구 투항에 대한 고려·조선 조정의 대응 방식의 유사점

등경광 왜구와 나가온 왜구의 투항에 대하여, 고려 조정과 조선 조정의 대응 방식에서의 유사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표2]와 같다.

[표2] 등경광 항왜 집단과 나가온 항왜 집단에 대한 고려·조선 조정의 대응 비교

	등경광 항왜 집단	나가온 항왜 집단 (제1차 항왜 도주 사건)
항왜 분치	전라도 순천, 충청도 연기 등지로 나누어 거쳐하게 함(<사료10>·<사료11> ㉔구절).	구륙, 나가온 등 소수 인원은 한양으로 상경시키고, 나머지 항왜들은 경상도에 머물게 함. ⁵⁷⁾
식량 지급	항왜들에게 재물과 식량을 지급함(<사료10>·<사료11> ㉔구절)	항왜들에게 식량, 의복 등을 지급함. ⁵⁸⁾
조정의 토벌 지시	밀직부사 김세우가 전라도원수 김선치에게 항왜 토벌을 지시함(<사료10>·<사료11> ㉔구절)	5도 도통사 김사형이 각도 도절제사 최운해 등 4명에게 항왜 토벌을 지시함. ⁵⁹⁾
토벌 계획 누설 및 도주	토벌 계획이 누설되어 등경광 등이 도주함(<사료10>·<사료11> ㉔구절)	승려 의운에 의하여 토벌 계획이 누설되어 항왜들이 도주함. ⁶⁰⁾
군관 처벌	김선치가 전과(戰果)를 거짓으로 보고하여 처벌됨(<사료10>·<사료11> ㉔구절)	최운해는 영을 위반한 죄, 나머지 도절제사 3명은 기한을 어긴 죄로 처벌됨. 유양은 토벌 계획을 누설한 죄로 처벌됨. ⁶¹⁾

[표2]에 보듯이 등경광 항왜에 대한 고려 조정의 대응과 나가온 항왜에 대한 조선 조정의 대응의 양상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등경광 항왜와 나가온 항왜는 고려·조선 조정에 투항하여 한반도에 상륙해 있었지만 그 전투력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한 상태였다. 따라서 고려·조선 조정은 이들의 움직임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⁶²⁾ 그렇기 때문에 [표2]의 ‘항왜 분치’ 항 및 ‘조정의 토벌 지시’ 항에 보듯이, 고려·조선 조정은 항왜 집단을 두 개 이상의 집단으로 분리하여 관리하였고, 결국에는 이들을 토벌하려 했던 것이다.

다만, 군관 처벌에서의 죄목이 외견상 다른 것처럼 보인다. 조선 조정은 최운해 등 도절제사들과 유양에 대하여 모두 나가온 항왜에 대한 토벌 실패에 관한 책임을 묻고 있지만, 고려 조정은 김치선의 거짓보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치선의 거짓보고는, 김치선이 항왜 토벌로 인한 성과가 미흡한 점에 관하여 고려 조정으로부터 “죄를 받을까 두려워하여”(〈사료10〉·〈사료11〉 ㉔구절) 이루어졌던 것이다. 즉 항왜 토벌의 책임자인 김치선이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당시 고려 조정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 역시 고려 조정 및 조선 조정의 대응 방침은 같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397년 나가온 왜구 집단에 대하여 조선 조정이 토벌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일은, 조선 태조만의 독특한 왜구 대응 방침이었다거나, 나가온 왜구 집단의 투항 방식이 특

57)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 4월 2일 갑자; 『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 12월 21일 을사; 권11, 태조 6년 4월 6일 무자; 4월 24일 병오; 송종호, 같은 논문, 289쪽 등 참조.

58)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1월 3일 병진; 2월 28일 신해; 4월 16일 무술; 4월 26일 무신; 권12, 태조 6년 10월 8일 병술 등 참조.

59) 위 제3장 제2절 가.항 참조.

60) 위 제3장 제2절 나.항 참조.

61) 위 제3장 제2절 가.항 및 나.항 참조.

62) 다나가 다케오는 “언제 다시 원래 왜구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위험성”, 마츠오 히로키는 “왜구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감”이라는 표현으로 위 본문의 취지와 유사한 서술을 한 바 있다(田中健夫, 『倭寇と勘合貿易』, 32쪽; 松尾弘毅, 「中世日朝關係における前期受職人とその変遷」, 286쪽).

이해하였던 것이 아니었다. 고려·조선 조정은 미리 예상치 못했던 왜구들의 투항 제안을 수락하면서도, 이들 항왜들을 경계하였고, 일말의 의심이 있으면 곧바로 이들을 토벌하려 했던 모습으로 파악된다. 즉 이러한 대응 방침은 고려말부터 조선초까지 일관된 것이었다.

다. 등경광·나가온 왜구 투항 이후 왜구 활동 전개에서의 차이점

고려·조선 조정의 항왜 토벌 시도와 항왜들의 도주 사건은 그 이후 왜구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우선 이들 각 사건을 기준으로 그 전후 10년 동안의 왜구 활동 빈도를 보면, [표3]⁶³⁾과 같다.

[표3] 등경광·나가온 왜구 도주 사건 전후 10년간의 왜구 활동 빈도

등경광	1364	1365	1366	1367	1368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도주	8	3	3	1	0	2	2	4	11	6	13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1385
		15	32	23	22	14	14	8	13	12	11
나가온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도주	0	4	9	5	3	1	2	12	14	6	14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0	4	0	5	5	9	7	0	13	8

우선 1375년 등경광 사건 전후 시기를 보자. 그 이전 10년(1366년~1375년) 동안 연평균 4.7회의 왜구 침구가 있었는데, 1375년 등경광 도주 사건 이후로 증가하여 1376년(우왕2)부터 1379년(우왕5)까지는 각각 연 15, 32, 23, 22회로 그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등경광 사건이 당시 왜구들을 자극하였던 것일까? 이에 관하여 『고려사』에는 <사료12>와 같이 서술되어 있다.

<사료12> [<사료10>에 이어서] 이 사건 전에 왜적은 주군(州郡)을 침략하면서도 사람과 가축은 죽이지 않았는데, 이 때로부터 왜적이 쳐들어올 때마다 부녀와 아이들을 남김없이 도륙하였고, 전라도와 양광도 해안의 주군은 모두 텅 비어버렸다. 김선치로 말미암아 그들이 격노하였던 것이다.⁶⁴⁾

<사료12>는 고려 조정이 선불리 항왜 세력을 토벌하려 하였다가 실패했고, 그러한 소식이 왜구들에게 퍼져 왜구들의 침구 활동이 잔혹해지고 심해졌다는 취지이다. 기존의 통설적 견해 중 초기 견해, 특히 일본 측 여러 연구자들은 위 <사료12>를 인용함으로써, 1376년 이후 고려말 왜구의 극성기가 시작되었던 배경이 등경광 사건에 있었다고 설명했던 바 있다.⁶⁵⁾

63) 이영, 「동 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왜구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 초를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36, 2010, 194~195쪽(1364~1391년 부분); 송종호, 「조선초 왜구 활동과 조선-일본 관계 연구 — 태조~태종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29쪽(1392~1407년 부분).

64) 『고려사』 권114, 열전 권27, 제신, 김선치. 「前此, 倭寇州郡, 不殺人畜, 自是, 每入寇, 婦女嬰孩, 屠殺無遺, 全羅·楊廣濱海州郡, 蕭然一空. 由先致, 激怒之也. 」 『고려사절요』 권30, 신우1, 우왕 1년 7월도 같은 취지이다.

65) 예건대, 竹越与三郎, 『倭寇記』, 白揚社, 1938, 23~24쪽; 田中健夫, 『倭寇と勘合貿易』, 12쪽; 中村栄孝, 앞의 논문, 145~146쪽; 関 周一, 「「中華」の再建と南北朝内乱」,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編, 『日本の対外関係4: 倭寇と『日本国王』』, 吉川弘文館, 2010, 83~84쪽; 韓容根, 「高麗末倭寇에 對한 小考」 『慶熙史學』 6·7·8, 1980, 6~7쪽 등 참조.

그러나 <사료12>는 당시 고려 조정 내지 『고려사』를 저술한 사관들의 인식이었을 뿐이며, 실제 당시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료12> 밑줄친 부분에서 등경광 사건 이전 왜구는 “사람과 가축은 죽이지 않았는데,”라고 서술되어 있지만, 등경광 사건이 있던 1375년 이전에도 왜구가 고려 사람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은 한국과 일본의 여러 사료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⁶⁶⁾ 이처럼 등경광 사건으로 인하여 1376년 이후 왜구가 급증했다는 <사료12>의 취지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에 근거한 일본 측 위 연구들 역시 믿기 어렵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주요 연구자들은 등경광 사건 전후의 실제 정세를 고려하여, 등경광 사건을 왜구 활동 격화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⁶⁷⁾ 즉 1376년 이후 왜구 급증 현상은, 당시 일본 남북조 시기에 막부(즉 북조)가 임명한 규슈 단다이(九州探題)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이 남조 측을 강하게 압박하는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그 주된 원인이 있었던 것이지,⁶⁸⁾ 고려 조정이 항왜를 토벌하려다 실패했던 사건 하나가 그 원인은 아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 조정이 나가온 항왜 토벌에 나선 후의 사정도 살펴보자. 위 [표3]에 따르면 그 이전 10년(1388년~1397년) 동안 연평균 7.9회의 왜구 침구가 있었는데, 1397년 항왜 토벌 사건 이후에는 1405년(태종5)까지 5년 동안 왜구 침구가 연평균 2.8회로 감소한다. 특히 나가온 항왜 토벌 직후인 1398년(태조7)부터 1400년(정종2)까지 3년 동안에는 총 4회(연평균 1.3회)의 침구만이 보인다. 즉 등경광 사건과는 정반대로, 나가온 항왜 토벌 시도 이후 왜구 활동은 급감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거의 동일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던 항왜 토벌 및 군관 처벌 사건에 관하여, 등경광 사건 이후에는 왜구 활동이 급증했고, 나가온 사건 이후에는 그것이 급감하였다. 만약 고려·조선 조정의 항왜토벌-항왜도주-군관처벌 사건이 왜구 활동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이러한 상반된 모습이 보일 리 없다. 즉 항왜 토벌 및 군관 처벌 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왜구 활동을 자극하거나 감소시키는 효과가 없는 것이다.⁶⁹⁾

위와 같은 고찰에 근거할 때, 고려 조정의 항왜 토벌 시도가 왜구 활동의 증가를 초래하였다는 취지의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서술, 그리고 그에 근거한 일부 일본 연구자들의 분석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조 항왜 도주 사건에 대한 군관 처벌이 조선 조정의 ‘항화장려책’, 즉 ‘회유책’이었다는 취지의 기존 통설적 견해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 점도 역시 확인된다.

66) 예컨대, 『고려사』 권39, 공민왕 9년 윤5월 1일 병진; 권40, 공민왕 13년 12월 1일 경인; 권44, 공민왕 22년 6월 26일 병신; 9월 3일 신축; 권115, 열전 권28, 제신, 우현보(『고려사』 권83, 지 권37, 병3, 선군, 공민왕 22년 5월 조 기사에 따라, 왜구의 고려 장수 살해를 언급한 우현보의 상소가 1373년 5월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善隣国宝記』 貞治 6年(1367) 丁未(田中健夫 編(1995), 『善隣国宝記・新訂統善隣国宝記』, 集英社, 96~97쪽) 「... 海賊數多出自貴國地, 來侵本省合浦等, 燒官廩, 擾百姓, 甚至殺害 ...」 등 참조.

67) 田村洋幸, 앞의 책, 48쪽; 村井章介, 「倭寇と朝鮮」 『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 校倉書房, 1988, 320~321쪽(무라이 쇼스케, 「倭寇와 朝鮮」 『동아시아속의 중세 한국과 일본』, 경인문화사, 2008, 124~125쪽); 羅鍾宇, 「홍건적과 왜구」, 국사편찬위원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신편 한국사 20)』, 1994, 405쪽 각주 27번; 金普漢, 「少貳冬資와 倭寇의 일고찰 一少貳冬資의 피살과 관련해서一」 『日本歴史研究』 13, 2001, 64쪽 등 참조.

68) 羅鍾宇, 「홍건적과 왜구」, 405쪽; 金普漢, 앞의 논문, 75~77쪽; 李領, 「<경인년 이후의 왜구>와 마쓰라토(松浦党) -우왕 3년(1377)의 왜구를 중심으로-」 『日本歴史研究』 24, 2006, 111~160쪽; 이영, 「왜구의 단계별 침구 양상과 고려의 대응」 『동북아문화연구』 31, 2012, 181~212쪽 등 참조.

69) 필자는, 1397년 이후 왜구 활동의 급감은 1396년 김사형 정벌군에 의한 이키·대마도 정벌 시도 등 조선 조정의 군사적 조치에 그 배경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기획에 자세히 논증하기로 한다.

IV. 맺 음 말

1396년(태조5) 12월 투항한 나가온 왜구 집단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차례의 도주 사건을 일으켰다. 기존의 통설적 견해에서는 이 도주 사건을, 계림부윤 유양의 미숙한 접대로부터 항왜들의 의심이 비롯되었고 그 결과 항왜들이 도주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그러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조선 조정의 현지 군관 처벌은, 모처럼 투항을 결심한 항왜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을 문책하기 위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존의 통설적 견해는 이러한 논리에서 조선 조정의 군관 처벌이 왜인에 대한 ‘회유책’이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제1차 및 제2차 도주 사건의 배경에, 국왕 태조를 비롯한 조선 조정의 은밀한 항왜 토벌 지시, 그리고 그에 따른 현지 군관들의 토벌 준비 내지 시도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모습은 고려말인 1375년(우왕원) 등경광 왜구 집단의 투항 및 그에 대한 고려 조정의 토벌 시도 사례와 거의 같았다는 점도 새롭게 확인하였다.

나가온 왜구 집단의 투항은 애당초, 조선 조정이 이키·대마도 재정벌을 목적으로 강력한 정벌군을 결성하였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왜구들의 투항 역시 정벌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왜구들은 투항 이후에도 자신들의 병력 및 병선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선에 대한 적대행위만을 중지하는 정도로, 필요 최소한의 투항 모습만을 보이고자 했다. 조선 조정은 이러한 항왜들의 투항 모습을 경계하였고, 그러한 경계심은 이들에 대한 토벌 시도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조선 조정의 항왜 토벌 시도는 그 배경 및 전개 과정으로 볼 때, 왜구들에 대한 ‘회유책’으로 파악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인다.

조선 조정의 토벌 대상이 된 항왜들은 대마도로 도주하였으므로, 대마도 등 일본에 있던 왜구 세력들은 고려·조선 조정의 일관된 항왜 토벌 방침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 이후로는, 1399년(정종1) 11월 등망오시라(藤望吾時羅) 왜구 집단 투항과 같은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그 침구 활동 중에 임시방편으로 조선 조정에 투항하는 일은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된다.

기존의 통설적 견해에서는, 조선 조정의 ‘회유책’으로 말미암아, 나가온 왜구 투항을 위시한 왜구 투항이 증가했다고 설명해 왔지만, 사료에 기반한 실제 모습은 그러한 설명과 큰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통설적 견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태조실록』~『세종실록』)

『동문선』 권93 「序」, 「贈李府使詩序」.

『善隣国宝記』(田中健夫 編(1995), 『善隣国宝記・新訂統善隣国宝記』, 集英社.)

金普漢, 「少貳冬資와 倭寇의 일고찰 一少貳冬資의 피살과 關係해서一」 『日本歷史研究』 13, 2001, 57~77쪽.

- 羅鍾宇, 「韓國中世對日交渉史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羅鍾宇, 「흥건적과 왜구」, 국사편찬위원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신편 한국사 20)』, 1994, 383~415쪽.
- 사에키 고지(佐伯弘次), 「14~15세기 동아시아의 해역세계와 일한관계」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3, 2010, 19~48쪽.
- 孫弘烈, 「麗末・鮮初의 對馬島征伐」 『湖西史學』 6, 1978, 111~140쪽.
- 송종호, 「조선초 왜구 활동과 조선-일본 관계 연구 — 태조~태종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송종호, 「조선초 왜구의 퇴조와 조선 조정의 '회유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1396년(태조 5년) 나간 왜구 집단의 투항과 김사형의 이키·대마도 정벌군 출진 간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78, 2022, 251~297쪽.
- 이명훈, 「李藝 관련 왕조실록의 誤記」 『韓日關係史研究』 57, 2017, 213~245쪽.
- 李領, 「<경인년 이후의 왜구>와 마쓰라토(松浦党) —우왕 3년(1377)의 왜구를 중심으로—」 『日本歴史研究』 24, 2006, 111~160쪽.
- 이영, 「동 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왜구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 초를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36, 2010, 175~230쪽.
- 이영, 「왜구의 단계별 침구 양상과 고려의 대응」 『동북아문화연구』 31, 2012, 181~212쪽.
- 이태훈, 「14세기 후반 대일 외교사절로 본 한일관계」 『조선통신사연구』 32, 2021, 77~110쪽.
- 李鉉淙, 「朝鮮初期 向化倭人考」 『歷史教育』 4, 1959, 340~368쪽.
- 정영현, 「동해안의 왜구와 쓰시마 早田氏」 『한국민족문화』 67, 2018, 199~233쪽.
- 河宇鳳,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일본과의 관계」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신편 한국사 22)』, 2002, 367~410쪽.
- 韓文鍾, 「朝鮮前期 對馬島の 通交와 對日政策」 『韓日關係史研究』 3, 1995, 125~172쪽.
- 韓容根, 「高麗末倭寇에 對한 小考」 『慶熙史學』 6·7·8, 1980, 1~15쪽.
- 有井智徳, 「李朝初期向化倭人考」 『村上四郎博士和歌山大学退官記念 朝鮮史論文集』, 開明書院, 1982, 275~362쪽.
- 長 節子, 『中世日朝關係と對馬』, 吉川弘文館, 1987.
- 佐伯弘次, 「中世の三島地域と東アジア」, 佐伯弘次 編, 『街道の日本史49: 壱岐・對馬と松浦半島』, 吉川弘文館, 2006, 85~101쪽.
- 関 周一, 「「中華」の再建と南北朝内乱」,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編, 『日本の對外關係4: 倭寇と『日本国王』』, 吉川弘文館, 2010, 81~106쪽.
- 竹越与三郎, 『倭寇記』, 白揚社, 1938.
- 田中健夫, 「倭寇の変質と日鮮關係の展開」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 東京大学出版会, 1959, 1~34쪽.
- 田中健夫, 『倭寇と勘合貿易』, 至文堂, 1961.
- 田村洋幸, 『中世日朝貿易の研究』, 三和書房, 1967.
- 中村栄孝, 「室町時代の日鮮關係」 『日鮮關係史の研究(上)』, 吉川弘文館, 1965, 141~202쪽(原著 1935).
- 松尾弘毅, 「朝鮮前期における向化倭人」 『史淵』 144, 2007, 25~54쪽.
- 松尾弘毅, 「中世日朝關係における前期受職人とその変遷」 『전북사학』 35, 2009, 281~317쪽.

村井章介, 「倭寇と朝鮮」 『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 校倉書房, 1988, 312~334쪽(무라이 쇼스케,
「倭寇와 朝鮮」 『동아시아속의 중세 한국과 일본』, 경인문화사, 2008, 115~138쪽).
村井章介, 『中世倭人伝』, 岩波新書, 1993(이영 역, 『중세 왜인의 세계』, 소화, 2003).

【토론문】

제3발표

『한국수산지』의 해도와 일본 해군의 외방도(外邦圖)

발표 : 서경순(부경대학교)
토론 : 김경록(군사편찬연구소)

【제3주제】

『한국수산지』의 해도와 일본 해군의 외방도(外邦圖)

서경순(부경대학교)

1. 서론

1908년 한국¹⁾ 수산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실시되었다. 한일 양국 간의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물이 『한국수산지』이다.

『한국수산지』는 총 4권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권(1908)은 한국의 지리적 위치, 면적, 지세, 구획, 인구 조사, 항구, 항로, 정박지, 어업 그리고 해류, 조석(潮汐), 기상, 수심, 저질 등 근대 과학적 해상에 관한 통계조사표, 무역, 해운, 통신 그리고 수산 일반을 조사한 총론에 해당된다. 제2권(1910)은 함경도·강원도·경상도, 제3권(1910)은 전라도(제주도 포함)·충청도, 제4권(1911)은 경기도, 황해도·평안도로 나누어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하였다. 제2권~제4권에는 조사지역에 일본인의 근거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들의 직업, 소속조합(단체)과 교통, 학교, 병원 등 일본인 편익생활시설에 대한 부분까지 면밀하게 조사 정리하였다. 특히 일본어부가 근거할 경우에는 출신지 및 소속(조합)단체명, 어선, 어구, 어법, 어종과 어획량, 어획물 유통과정 등 경제부분까지 상세하게 밝혀두었다.

그리고 제2~4권의 특이점은 수심 장의 해도가 삽입된 점이다. 해도에는 영어 알파벳, 기호, 숫자 등이 표기되어 있으며, 특히 해도 여백에 해도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것도 다수 발견된다. 전자의 경우는 연안의 수심, 저질(底質), 위험 표시 등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실측에 의해 제작된 해도라는 것을 암시한다.

일본에서 근대 해군이 창설된 것은 1871년 병부성의 군사조직 개편에 의해 육군과 해군이 분리되면서 이루어졌다. 군사개편은 국방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당시 해군을 창설한 것은 유럽의 근대 군사체계를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해군이 창설되면서 곧바로 수로부를 설치하여 자국의 하천 및 연안에 대한 실제 측량을 이루어졌으며, 점차 비밀리에 외방도(外邦圖)라는 남의 나라의 지도 제작을 추진하였다.

대부분의 나라는 국가특급기밀인 지도를 극비로 다루었는데 일본에서 어떻게 외국의 지도 즉 외방도를 제작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대상국에 스파이를 침투시켜 그 나라 사람을 매수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지도 입수하여 지리를 비롯한 군사 기밀에 해당되는 필요 부분에 대한 자문을 얻어서 외방도를 제작하는 방법인데 거의 대상국의 지도를 복제한 수준이었다. 두 번째는 일본 군부의 밀령으로 장교로 구성된 비밀 측량대를 만들어 대상국에 잠입시키는 방법이다. 첩보원들은 대상국에서 잠입하여 보측(步測) 또는 목측(目測)으로 노선을 비롯한 군사상 필요한 여러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대상국의 지도를 기본으로 하여 외방도를 제작하였다. 세 번째 방법은 구미 각국의 해도를 구

1)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조선과 한국을 혼용하였는데 이글에서는 편의상 한국으로 통칭한다.

입하여 이를 바탕으로 일본 해군 수로부에서 재측량하여 수정 보완단계를 거친 후 해도를 제작하였다. 이 또한 구미의 해도를 복제하는 수준이다.²⁾ 일본 해군의 초기 외방도는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만든 해도가 아니었다. 또한 초기 외방도는 해군에서만 제작한 것이 아니었다. 육군 참모국에서도 제작하였다. 조선전도라는 외방도를 해군과 육군에서 각각 제작하였다. 육군 참모국의 조선전도는 경계(국경, 道, 郡, 府), 수도(首都), 兵營, 水營 그리고 조선팔도의 노선도(路線圖)등 내륙 정보에 집중되어있다. 이 정보는 군사적 측면과 관계가 있다. 곧 외방도는 『한국수산지』는 수산진흥을 위하여 편찬되었다. 독자층은 수산진흥의 가장 근본이 되는 어업자 및 수산관계자들에게 지침서로 제공하고자 간행하였다. 그런데도 이 서적에는 군사적 측면에서 제작되었던 해군 수로부의 해도(외방도)가 첨부되어있다. 해군 수로부의 해도가 왜 첨부되어있는지, 그리고 이 해도가 일본 어부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이에 대한 의문을 풀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외방도의 제작 배경 및 목적과 아울러 『한국수산지』의 편찬 배경 및 목적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한국수산지』에 첨부된 해도와 일본 해군 수로부에서 제작한 해도 즉 외방도의 상관관계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2. 외방도(外邦圖)의 제작 배경

1868년 일본은 메이지정부를 수립하여 근대화를 목표로 구미 체제를 신속하게 수용하여 모든 체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군사 면에서도 근대식 군사조직을 갖추었으며, 유럽과 마찬가지로 군대에 수로부를 두었다. 수로부는 최초 수로측량 및 부표(浮標)·입표(立標)·등대 설치 등 기초적인 업무를 실시하였으나 점차 근대적인 요소를 갖춘 지도(해도) 제작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상황은 측량술, 제작술 등의 기술력도 부족하였지만, 이에 필수적인 도구 또한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수로부에서 근대 해도 제작을 시도한 까닭은 무엇일까? 일본의 군사체계는 구미의 군사체계를 받아들였던 점에서 구미 각국에 설치된 수로부에서 근대 해도를 제작한 배경과 해도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1) 근대 유럽의 해도(지도)

외방도는 외국의 지도를 말한다. 근대 외방도의 근원은 15세기 유럽의 대항해 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 대항해 시대의 선두 국가는 이베리아반도의 작은 나라 포르투갈이다. 1416년 포르투갈의 왕자 엔히크는 사그레스 곳에 조선소, 천문관측소 등을 세워서 해도 장인 및 천문학자 등 여러분야의 지식인을 초빙하여 전문적인 항해술 및 해도 제작술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였다. 그리고 조직적인 항해 탐험을 거듭한 결과 아프리카 서안 항로가 개척되는 동시에 최초의 근대해도를 제작하였다. 엔히크가 항로 개척에 나선 목적은 기독교 전파를 앞세운 향신료 독점무역이었으므로 당연히 해도는 포르투갈의 독점항로의 결정적인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해도는 국가의 특급비밀로 하여 철두철미하게 관리되었다. 또한 후발주자인 스페인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도 포르투갈과 마찬가지로 해도는 극비로 엄중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17세기 초, 동판기술이 보급되어 인쇄술의 발달로 해도의 산업화가 시작되는 한편 해양자유론이 주창되기 시작하면서 영국 및 네덜란드에서 자유롭게 해양으로 진출하였으며,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는 해도 공유화를 실현하였다.

2) 小林 茂, 近代日本の地圖作製とアジア太平洋地域, 大阪大學出版會, 2009, 2~4쪽.

그리고 18세기에 이르면 유럽 각국에서 군대에 수로부를 설치하여 근대 과학기술을 동원하여 체계적인 측량에 나섰다. 최초 수로부를 설치한 국가는 프랑스(1720)이며 이어서 덴마크(1784), 영국(1795), 스페인(1800) 등이며, 대부분의 국가는 육군에 수로부를 설치한 반면에 영국은 해군에 설치하였다. 섬나라인 지정학적인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해군에 역점을 둔 것으로 생각된다.³⁾

해군은 국제질서에서 최첨단 근대화의 상징이다. 19세기에 증기 기관이 출현하여 군함 및 조선(造船)에 급속한 발전과 함께 운송술과 항해술을 겸비한 해군사관 또한 근대 군사조직에서 필수적인 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다.⁴⁾ 영국 해군 수로부에서는 군함을 비롯한 선박의 정비와 항로조사를 위하여 연안측량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측량선을 별도 구비하여, 전담 수로부장 채용하는 한편 측량술과 해도제작술을 익힌 해군사관을 선발하여 실제 측량에 나섰다. 수로부의 반복된 측량으로 점차 정확도가 뛰어난 해도가 만들어졌다. 영국 해군 수로부는 자국 연안을 실측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다른 나라의 연안에 진출하여 실측하여 해도를 제작 간행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유럽 각국 수로부에 자유무역주의 활성화를 위한 해도 공유 요청을 하면서 유럽 각국 간의 해도공유가 이루어졌다. 해도 공유 방법은 간단하였다. 실측 제작한 해도를 다량 인쇄하여 매우 싼값으로 자국은 물론이고 외국에도 자유롭게 판매하는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보급되었다. 특히 영국 해군의 해도는 정확도가 차별화되어 선원들에게 인기가 높아서 세계적인 규모로 보급되었다. 이러한 영국 해도의 우수성은 1884년 10월 제1회 국제자오선회의에서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자오선을 세계의 본초자오선으로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⁵⁾. 지구상의 본초자오선을 통일한 것은 해도의 표준화를 극대화시켰으며, 해도 공유는 국제적인 무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산업혁명은 범선을 증기선으로 이동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신식 증기선은 연료보급지 확보라는 난관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유럽 각국에서 앞을 다투어 무인도 및 무주지 선점 경쟁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 지켜야 할 구미에 규정한 국제 질서에 따라야 했다.

이 국제법에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영토 또는 주권을 포기한 영토를 무주지로 규정하였으며, 지구상의 국가를 문명국, 반문명국(반개국), 비문명국(미개국)으로 구분하여 기독교를 믿는 구미를 문명국으로 설정하고 비기독교 국가인 약소국은 주권이 미치지 않는 미개국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문명국은 무주지로 설정된 비문명국을 문명개화라는 미명하에 무력 점령할 수 있는 논지를 만들어 두었다. 이 논지는 유럽 열강국에 대한 약소국을 식민지화에 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편이 되었다. 그리고 무주지 선점 논지에 의해 유럽 열강국에서 타국의 연안에 출몰하여 실측한 후 해도를 제작하여 다량 인쇄하여 싼값에 판매하였다. 해도에는 반드시 측량 국가명, 측량 일자, 발행 일자가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당시 유럽 열강국들의 무주지 선점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구미 열강국의 근대 해도는 식민지 구축과 연동되어 있었던 것이다.

3) 미야자키 마사카츠 저, 이근우 역, 『해도의 세계사』, 도서출판 어문학사, 2017, 103~108, 228~231, 295.

4) 박영준, 『해군의 탄생과 근대 일본』, 그물, 2014, 28~29쪽.

5) 미야자키 마사카츠 저, 이근우 역, 『해도의 세계사』, 도서출판 어문학사, 2017, 286~288, 295~298, 304~306.

1884년 제1회 국제자오선회의에 참가한 국가는 25개국이었다. 영국 그리니치 본초자오선에 대하여 찬성 24개국, 반대 1개국(프랑스)이다. 프랑스도 27년 후에는 그리니치 본초자오선을 인정하였다. 또한 그리니치 본초자오선을 설정한 것에는 당시 항해 선박의 70%가 영국 선박으로 그리니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던 점에서도 크게 좌우했다.

2) 근대 일본의 외방도

근대 유럽의 측량술과 해도 제작술이 동양에 어떻게 유입되었을까?

동양에서 근대해도 제작을 시도한 국가는 일본이다. 우선 나가사키해군전습소(長崎海軍傳習所)에서 그 단서를 찾아보자.

19세기 일본의 각 연안에서 유럽 열강국의 군함에 의해 실측이 이루어졌지만 강력한 무력 앞에 막부는 속수무책이었다.⁶⁾ 타국의 연안을 실측하여 해도를 제작하는 이유는 앞에서 살펴 보았다. 구미의 국제법은 1864년 중국에서 『만국공법(萬國公法)』이란 제목으로 번역 출판되면서 동양에 전해졌다. 그리고 1868년에는 일본어 번역서가 출판되면서 『만국공법(萬國公法)』은 일본사회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⁷⁾

에도막부는 유럽 열강의 무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나가사키에 해군전습소를 설립하고 네덜란드 교관을 초빙하여 유럽의 항해술, 조선학, 측량학, 선구학, 기관학, 포술(砲術) 등 근대 교육 및 실제 항해 실습을 병행하여 해군사관을 양성하였다. 전습소 졸업생 중 주목되는 인물은 1기생인 야나기 나라요시(柳橋悦)⁸⁾와 오노 토모고로(小野友五郎)⁹⁾이다. 이 2인은 일본에서 측량술, 항해술, 해도제작술을 견인한 선구적인 인물들이다. 특히 야나기 나라요시는 1870년 해군에 출사하여 근대 해도 제작을 시도하였다¹⁰⁾.

6) 小林 茂(2011), 外邦図 帝国日本のアジア地図, 中央公論新社, 30쪽(1845년 나가사키 연안에서 영국 군함 사마랑호(サラマンガ號)가, 1849년에는 에도만과 시모다항에서 마리나호(マリナー號)가, 1855년에는 대마도 해협을 비롯한 규슈 지역 일대에서 사라센호(サラセン號) 등 무단 측량이 이루어졌다)

7) 조세현, 2018년 12월 4일자 21면 해양문화의 명장면<42> 만국공법과 근대 동북아 해양분쟁: 김용구(2008), 『만국공법』, 도서출판 소화, 57~68쪽, 93~124쪽(『만국공법』(1864)은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마틴(W.A.P.Martin)이 중국주재 미국공사 별령게임의 의뢰로 휘튼(H.Wheaton)의 저서 『국제법 원리』(1836)를 한역한 서적인데, 이 서적은 동아시아에 본격적으로 구미의 국제법을 소개한 최초의 서적이다. 『만국공법』은 중국에서 출간된 다음, 일본에 전해졌는데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사정』과 함께 당시 베스트셀러가 되어 중국보다 일본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한편 메이지유신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일본에서 『만국공법』을 적용시킨 사례로는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의 이로하마루의 해양 분쟁사건을 들 수 있다. 1867년 4월 사카모토 료마는 오오즈번(大洲藩)에서 160톤급 증기선 이로하마루(伊呂波丸)를 빌려 무기와 탄약을 싣고 나가사키에서 오사카로 항해하던 중에 기슈번(紀州藩)의 887톤급 증기선 아카미스마루(明光丸)와 충돌하여 침몰하였다. 양측에서 이로하마루에 대한 손실 배상을 놓고 여러 차례 담판을 벌였지만 별 진척이 없었다. 그런데 료마가 아카미스마루의 항해일지를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충돌 당시에 아카미스마루에는 파수꾼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료마는 항해 시에 파수꾼을 배치해야 하는 것이 국제법규인데 두지 않았으므로 『만국공법』 위반하였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기슈번으로부터 배상금 8만3000냥을 지불받을 수 있었다. 『만국공법』이 한국에는 언제 전해졌는지 정확하지 않다. 그런데 한국(조선)은 만국공법을 알지 못하여 공법이 적용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야기한 한 사례가 있다. 1875년 일본 군함 운요호가 중국으로 가는 해로를 측량한다는 명분으로 조선 연해에서 무단 측량하던 중 강화도에서 조선수군과의 교전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중국의 이홍장은 『만국공법』의 3해리 영해규정을 적용시키면 일본이 조선의 영토에 불법 침범한 것이므로 조선 수군이 선제 발포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모리 아리노리(森有禮) 공사는 조선은 구미 측과의 조약을 체결한 바가 없기 때문에 『만국공법』을 적용시킬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당시 조선의 종주국인 중국이 나서서 일본과 담판하였지만 결국은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었다.

8) 柳橋悦(1832.10.8.~1891.1.15.), 수학자, 측량학자, 정치가 해군(海軍少将), 대일본수산회 간사장, 元老院議員, 貴族院議員 역임, 1853년 伊勢灣沿岸 측량, 1855년 나가사키해군전습소에 파견되어 항해술과 측량술을 습득, 1870년 해군에 출사, 영국 해군과 공동으로 해양측량 경험을 쌓았다. 당시 일본에서 해양측량의 제일 인자로 측량체제를 정비, 통솔하여 일본 각지의 연안, 항만을 측량하고 해도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공적에서 일본수로측량의 아버지”로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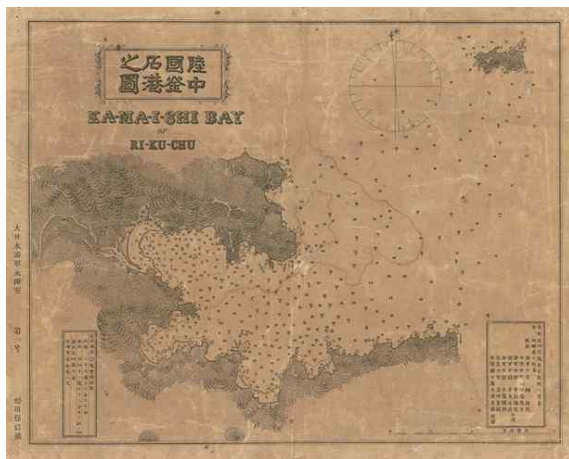
9) 小野友五郎(1817.12.1.~1898.10.29.), 수학자, 해군, 재무관료 역임, 1855년 에도막부의 명령으로 나가사키 해군전습소에 들어가 16개월간 천측 및 측량술을 익혔다. 츠키치군함조련소(築地軍艦操練所)를 신설할때 교수방(教授方)이 되었다, 1861년에는 군함행장으로 에도만을 측량하였고, 이어서 함림환(咸臨丸)에 승선하여 태평양을 횡단하면서 경위도를 측정하였다, 1861년에는 함림환 함장으로서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측량임무를 완수하였다. 이것은 오가사와라 제도의 일본 영유권에 큰 단서가 되었다.;

일본에서 근대 측량법에 근거하여 지도 제작을 시도한 것은 메이지시대 이후이며, 지형도 및 학습교재용 지도첩 등 다양한 지도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¹¹⁾.

내륙지도의 경우는 1869년 민부성 호적지도과(戶籍地圖課)에서 최초 근대식 지도제작을 시도하였으며, 1875년 내무성에서는 유럽의 삼각측량법을 수용하였고, 1877년에는 일본 전역 지적도를 완성하였다¹²⁾.

해도의 경우는 1869년 야나기 나라요시가 병부성의 어용계(御用掛)¹³⁾로 임명된 후 수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해도 제작을 시도하였다. 처음에는 측량 도구의 미비와 더불어 측량기사 조차 없었던 탓에 야나기가 직접 유럽의 측량술과 해도 제작술을 익히기 위하여 1870년 제일정묘함(第一丁卯艦)¹⁴⁾에 승선하여 영국의 해군 측량함, 실비아호(HMS Sylvia)와 협동하여 일본 연안 곳곳을 측량하였다.

그리고 1871년 군사체제 개편에 따라 육군부와 해군부가 분리되어 일본 최초의 근대 해군이



<그림 1> 陸中國釜石港之圖(1872년)

일본 군함 「春日艦」¹⁷⁾의 함장으로 북해도, 동북 연안을 실측하였으며, 이때도 영국의 실비아호가 동행하였지만 일본 해군은 독자적으로 실측을 하여 「陸中國釜石港之圖」<그림 1>¹⁸⁾라는 일본 최초의 해도를 제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¹⁹⁾

10) 矢吹哲一郎, 「日本による近代海図刊行の歴史(明治5~18年)」, 『海洋情報部研究報告』, 2020, 58쪽.

11) 船杉力修, 「分縣地圖の草分け『大日本管轄分地圖』について(1)」, 『湊雲』 19, 2017, 4 쪽.

12) 남영우, 「日帝 參謀本部 間諜隊에 의한 兵要朝鮮地誌 및 韓國近代地圖의 작성과정」, 『문화역사지리』 제4호, 1999, 78쪽.

13) 明治시대에 宮内省 및 기타 관청의 명령을 받고 용무를 담당한 사람의 직책

14) 日本海軍의 軍艦, 원래 長州藩이 영국 로이드社에 발주한 목조기선이다. 丁卯란 1867년을 말하며 이 해 건조된 것이 第一丁卯와 第二丁卯인데 長州藩이 명치 3년(1870년) 정부에 헌납하여 동년 병부성소관이 되어 「제일정묘함」이라고 개명하였고 명치 6년(1873년)까지 측량임무를 하였다.

15) 1871년 설치된 병부성 해군부 수로국은 1872년 2월 28일 해군성 수로국으로, 1872년 10월 13일은 해군성 수로로로, 1876년 9월 1일 해군성 수로국으로 1886년 1월 29일에는 해군수로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 명칭은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이다.; 1871년 야나기 나라요시의 계급은 해군 소좌이었다.

16) 서경순, 『『韓國水産誌』에 보이는 군산지역 海圖에 관하여』, 『2017년 제8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자료집 2 분과회의』, 2017, 263쪽.; ja.wikipedia.org/wiki/水路部_(日本海軍) - キャッシュ.

17) 慶応3年(1867) 사쓰마번이 영국에서 구입한 군함이다, 사쓰마번은 明治3年(1870) 이 군함을 메이지 정부에 헌납하였는데 明治5年(1872) 해군성이 창설되면서 일본 해군의 군함이 되었다. 春日艦은 1875년 강화도사건이 있었을 때 부산에 파견된 바 있으며,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조선에 파견되었던 군함이다.

18)

<https://www1.kaiho.mlit.go.jp/KIKAKU/kokai/kaizuArchive/birth/index.html>(검색일:2023.02.02.).

수로국은 자국의 연안 측량술과 해도제작술을 축적해 가면서 타국의 지도(해도), 즉 외방도 제작을 비밀리에 착수하였다. 일본 최초 제작한 외방도는 조선전도(朝鮮全圖)와 청국북경전도(淸國北京全圖)이다. 이글에서는 우리나라와 관계된 조선전도라는 외방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조선전도

19세기에 이르면 구미 각국에서는 해도 공유가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동양권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지도는 특급기밀로 엄중하게 관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조선전도라는 외방도를 제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1875년 일본의 육군참모국에서 제작한 조선전도²⁰⁾를 최초의 외방도라고 한다.²¹⁾ 그러나 이 외방도는 1873년 10월에 제작된 일본 해군의 조선전도²²⁾보다 2년 뒤에 제작된 것이다. 이 사실에서 일본의 초기 외방도는 한곳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육군과 해군에서 각각 외방도를 제작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지도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많은 지도의 보유 국이지만 그 어떤 나라보다도 지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었다. 또한 외국이 내륙을 측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육군과 해군은 어떻게 조선전도라는 외방도를 제작할 수 있었을까? 조선전도라는 외방도에 그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자.

3-1) 조선전도(해군 수로료, 1873년)

이 외방도는 8장을 조합한 것이다. 지도의 상단 중앙에 큰 글씨로 朝鮮全圖라는 지도 제목을 기록하고 그 왼쪽의 네모형의 박스에 지도제작에 대한 설명, 제작년월, 제작기관 그리고 경(서울), 대동, 평안, 부산 등 4지역은 위도와 경도의 수치도 기록해 두었다.²³⁾

19) 柳檣悅은 1870년부터 영국의 측량함 실비아호 함장 및 측량사관으로부터 수로측량기술 및 측량 도구를 원조받아 鹽飽諸島 측량을 하여 일본 최초의 수로측량의 결과물인 『鹽飽諸島實測原圖』를 완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72년 화재와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인하여 원도가 소실되었다. 그리고 1871년에 『양지팔요(量地括要)』를 저술한 후 부하들의 학습 교재로 활용하였으며, 같은 해에 北海道 연안의 수로 측량을 실시하여 해양의 여러 현상, 항로, 연안지형, 항만시설 등의 정보를 모아서 4권으로 구성한 『春日記行』을 집필한 후 천황에게 바쳤다.

1873년에 간행한 일본 최초의 수로지 『北海道水路誌』는 『春日記行』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한다(<https://www1.kaiho.mlit.go.jp/KIKAKU/kokai/kaizuArchive/birth/index.html>)-검색일 2023.02.02.; 1872년 간행된 『陸中國釜石港之圖』는 일본 최초의 해도 제1호로 일본 해군 水路寮가 독자적으로 측량 간행하였다. 釜石港은 당시 東京과 函館 간의 중간 보급지점으로 매우 중요한 항구였다. 釜石港을 대상으로 측량한 것은 관영 부석제철소(1875년 건설시작, 1880년 조업개시, 1883년 폐산)와도 관계가 있다.

20)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kenkyuukai_houkokusho/takeshima04_01/takeshima04d.data/1-3-2-2.pdf(검색일:2022.09.19.);

https://www.let.osaka-u.ac.jp/geography/gaihouzu/earlymap/views/84697511/84697511_001.html?agree=agree(검색일:2022.12.26.)-(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장된 조선전도의 서지정보에는 명치27년(1894), 제작자-陸軍文庫로 기록되어 있지만 조선전도에 기록된 例言에는 명치8년(1875) 11월, 육군참모국이 명시되어 있다.

21) 한철호 1875년 지도

22)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kenkyuukai_houkokusho/takeshima04_01/takeshima04d.data/1-3-1-2.pdf(검색일:2022.09.19.).

23) 1873년 조선전도에는 제작기관은 대일본해군수로료(大日本海軍水路寮), 제작년월은 명치 6년(1873) 10월을

이 지도에서 흥미로운 점은 가로를 길게 하여 한반도의 지형이 가로로 누운 형태로 그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지도의 방위 중 북쪽이 오른쪽에 위치한다. 그리고 지도의 내륙부는 道界、郡界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아도 우모형의 등고선을 나타낸 산(산맥)들이 뾰뾰하게 그려져 있다. 지도의 왼쪽 여백에 ‘대일본해군 수로료(大日本海軍 水路寮) 제1호, 이다 도주(井田道壽) 刻’이라는 기록에서 1호는 해군수로료에서 최초 작성한 외방도를 암시한다. <표1>은 해군 수로료가 밝힌 조선전도에 대한 설명이다.

<표 7> 조선전도(1873)

凡測				大日本海軍水路寮 明治六年十月		則欽覆悉稱 國去駕言總 不數之以出 免年之姑彼 其後補可邦 爲索我據人 贊測索故之 舉之今手纏		度向此春道全之者案 不界圖日其圖林甚朝 一址而艦餘然子希鮮 唯大半今海涉不常其國 於迷閱至影過作內沿 其誤之其響指朝部岸 地名與國去示鮮最經 島尺方得年八國欠實 測	
東經	北緯	東經	北緯						
百三十九度	三十五度	百三十八度	三十八度						
零一分	零一分	零一分	零一分						
四十九秒	六秒	四十九秒	六秒						

<그림 2> 조선전도(大日本海軍 水路寮. 1873)

조선국 연안을 살펴 보건대, 실측을 거친 자료가 극히 드물다. 그 내부(내륙)에 이르러서는 더욱 결여되어 있다.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일찍이 조선국 전도를 만들었는데 (아 지도는) 단지 팔도(조선 팔도)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지만 그 나머지의 어느 정도는 하야시 시헤이의 지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지난 해 춘일함(春日艦)²⁴⁾이 그 나라에 이르러 이 지도를 얻어서 돌아왔다. 지 지금 살펴보니, 그 방향과 영역이 대체로 잘못되었고 척도 또한 일치하지 않았다. 다만 그 지명이나 섬 이름은 모두 그 나라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이며 거들 말하기를, 확실해서 의거할 만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지금 복제하여 임시로 수로료의 부족함을 보완한다. 수년 후 수로료가 측정하게 된다면, 진실로 그 군더더기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명치 6년(1873) 10월
대일본해군수로료

범측(凡測)		
	동경(東經)	북위(北緯)
京(서울)	128도52분29초	37도 31분 15초
大東	124도55분45초	38도 4분
平安	125도 10분 16초	38도 42분 32초
釜山	129도1분49초	35도 6초

명기하였으며 범측(凡測)란에 서울, 대동, 평안, 부산의 4곳의 경도·위도가 기록하였다. 또한 이 4곳은 지도에 사각형의 블록으로 표시하여 쉽게 눈에 띈다. 당시 대동·평안·부산은 내륙을 잇는 수로가 있는 곳으로 내륙 교통로의 입구에 해당된다.

24) 慶應3年(1867)에 사쓰마번이 영국에서 구입한 군함이다. 明治3年(1870)에 사쓰마번에서 정부에 헌납하여

<표 1>에 제시한 내용을 통하여 해군의 1호 외방도는 18세기 일본의 최고 지리학자이자 국제 정치학자인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그린 朝鮮国全圖(1785)²⁵⁾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 매수인을 통해 조선 지도를 입수하는 한편 매수인으로부터 많은 조언을 얻어서 지도 제작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자국의 지도제작 전문가인 하야시의 지도보다는 조선의 지도를 토대로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지도에 일본 해군의 측량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해군의 1호 외방도는 매수한 조선지도를 복제한 것이다. 당시 매수인은 반도의 지형을 잘 아는 사람 중에 부유 상인층이거나 신분이 다소 높았던 양반층일 확률이 높다. 그렇지만 조선의 어떤 지도를 복제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외방도에서 근대해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범측(凡測)에 표시한 경도와 위도의 수치이다. 둘째는 지도 하단에 그려진 방위표이다. 셋째는 해도의 왼쪽 여백에 ‘대일본해군 수로로(大日本海軍 水路寮) 제1호, 이다 도쥬(井田道壽) 刻’이라는 기록에서 각(刻)이라는 한자에서 이다 도쥬(井田道壽)이라는 조각기술자의 기술에 의해 제작 인쇄된 해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일본해군의 초기 해도에는 해도의 제작자 외에도 동판조각자까지 이름을 기록하였지만 조각자에 대한 정보는 그다지 상세하지 않다. 그렇지만 이 조선전도를 조각한 이다 도쥬는 1872년에 1등 측량생으로 채용된 사람이었다. 1873년 1월에 동판조각과에 배속되어 동판조각에 대한 전연 경험이 없었지만 동판조각의 창시자인 마츠다 류잔에게 해도 동판조각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 1887년 이다 도쥬는 해도동판 인쇄의 직각법을 창시할 정도로, 실력이 매우 뛰어났던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조각했던 외방도 중에 대만도다구항지도(臺灣島多口港之圖), 대만전도지도(臺灣全島之圖), 대만남부지도(臺灣南部之圖), 대만도청국속지부(臺灣島清國屬地部), 대만부속평호제도(臺灣府屬澎湖諸島)는 대만을 대상으로 한 외방도로 거의 그가 독보적이었다.²⁶⁾

당시 일본 해군 수로로가 인쇄 해도를 대량 생산을 한 것은 당시 유럽의 해도 공유, 즉 근대 해도의 요건을 따른 것이며, 근대 국제질서인 만국공법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2) 조선전도(육군 참모국, 1875)

16장으로 구성된 이 조선전도는 앞에서 살펴본 1873년 해군 수로료에 간행한 조선전도에 비교하면 훨씬 진보된 양상을 보여준다.

우선 한반도의 윤곽이 잘 갖추어져 있다. 둘째는 各道를 다양한 색으로 나타내어 행정구역의 도계(道界)를 현저하게 구분하였으며, 도서(島嶼)도 관할 도(道)와 동일한 색으로 하여 해안 경계 또한 명확히 구분하였다. 그리고 국경선, 즉 중국과의 경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한반도의 영역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셋째는 지도의 테두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그은 실선에 경도·위도를 나타낸 숫자가 있다. 실선은 경도·위도의 수치를 세분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는 한반

明治5年(1872)에 해군성을 창설하였을 때 일본 해군 군함이 되었다. 1875년 강화도사건이 있었을 때 부산에 파견된 바 있으며, 1884년 갑신정변 때에도 조선에 파견되었던 군함이었다.

25) 林子平(에도시대 경제론가, 1738~1793)가 1785년 저술한 『三國通覽圖說』의 부속지도 5개(三國通覽輿地路程全圖, 琉球全圖, 無人島之圖, 朝鮮国全圖, 蝦夷国全圖) 중 하나이다.

26) 佐藤 敏, 「明治初期の腐蝕法による海図銅版作製者」, 海洋情報部研究報告 第58号, 2020, 1~7쪽(이다 도쥬는 1876년 15등급으로 출사하였으며, 동판조각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마츠다 류잔(松田 龍山)에게 지도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도가 그려진 왼쪽 부분의 중앙에 조선전도라는 지도명칭과 바로 아래에 축척비례(縮尺比例)를 나타낸 선이 있다. 이것은 거리단위인 리(里)가 일본의 1리는 조선의 10리와 같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한반도가 그려진 동서의 양쪽 여백에 부분도를 배치한 점이다. 먼저 예문 먼저 살펴본 후 부분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9> 조선전도(1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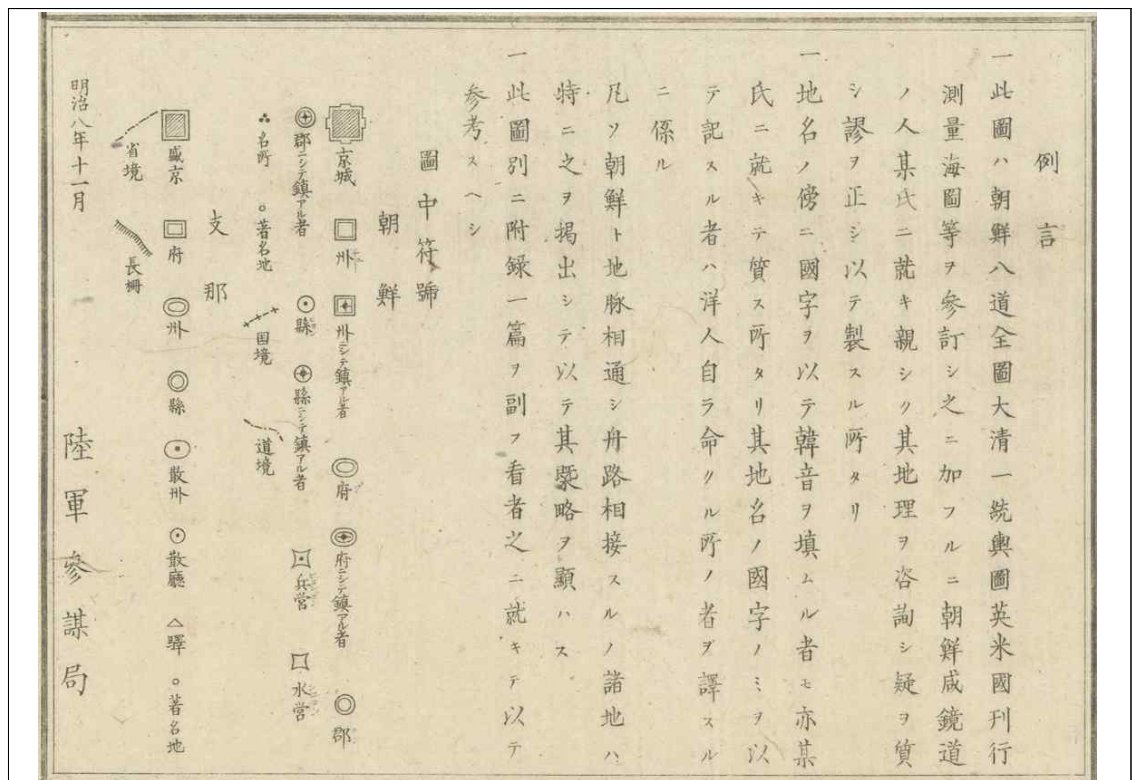


그림 3 조선전도(육군참모국, 1875)
例言

- 이 지도는 조선팔도전도(朝鮮八道全圖), 대청일통여도(大清一統輿圖), 영국 미국이 측량 간행한 해도 등을 참고 수정하고, 이에 추가해서 조선 함경도 사람 아무개에게 직접 조선의 지리를 자문받아, 의심스러운 곳을 묻고 오류를 바로잡아 제작하였다.
- 지명 옆에 國子(가타카나)로써 한국 음가를 붙인 것도, 또한 아무개에게 질문한 것에 의한 것이거나, 그 지명에 가타카나만으로 기록한 경우는 서양인들이 스스로 명명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 무릇 조선과 지맥(지리)가 상통하고 뱃길이 서로 접한 여러 지역은 특히 이를 드러내어(掲出) 대략을 분명하게 하였다
- 이 해도에 별도의 부록 1편을 붙이니 간자(看者)는 이에 참고하기 바란다.

<圖中符號>: 기호

명치 8년(1875) 11월

육군참모국

<표 3> 제시한 예언(例言)을 통하여 1875년 육군참모국에서 최초 제작한 조선전도라는 외방도 또한 해군과 마찬가지로 한국인 조력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른 부분은 해군의 조선전도에는 어떤 매수인인지 어떤 지도를 매수하였는지에 대한 일체 언급이 없었던 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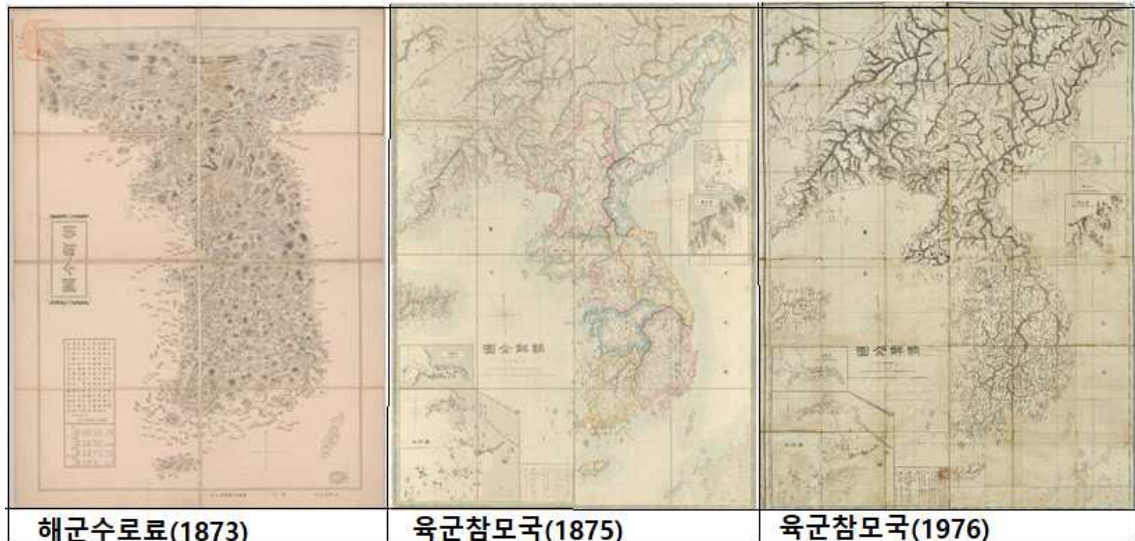


그림 4> 조선전도

에 육군에서는 조선팔도전도와 대청일통여도 그리고 영국·미국의 해도를 종합하였고 조선전도인 만큼 함경도 모씨를 매수한 사실이 밝혀져 있다.

함경도 모씨는 김인승(金麟昇)을 말한다. 김인승은 1869년 블라디보스톡 인근에 이주하여 살던 조선 양반이다. 1875년 4월 블라디보스톡에 출장 왔던 일본 외무성 관료, 세와키 히사토(瀬脇壽人)와 수차례 만나 필담으로써 국제정세를 비롯한 여러 의견을 주고받던 중에 세와키에게 매수된 자이다. 세와키의 블라디보스톡 파견 임무는 중국(淸國) 근항(近港)과, 블라디보스톡과 접경인 조선의 양항(良港) 조사 및 조선인을 매수하여 같이 조선내륙에 들어가 조선을 정탐하는 것이었다. 세와키는 의도적으로 조선인을 매수할 목적에서 김인승에게 접근하였는데 수차례 필담이 오가며 김인승이 조선의 전형적인 유학자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귀국하면서 김인승에게 동행을 권유하였고, 김인승은 세와키의 의도대로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외무성과 고용계약서를 체결하여 정식적인 외국인 고문으로 채용되었다. 계약기간은 8월1일~10월 31일(3개월)이며 업무는 ‘만주지방 및 조선 지지(地誌) 및 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자문’이었다. 김인승은 일본정부의 요구에 적극 협력한 결과, 다시 1년 고용계약이 연장되었다. 즉 김인승의 고용기간은 1875년 8월 1일~1876년 10월 31일(15개월)이다. 김인승이 외무성에 고용된 기간에 1875년 9월 운양호사건, 1875년 11월 조선전도 제작, 1876년 2월 강화도조약 체결이 맞물려있다. 이점에서 1875년 4월 블라디보스톡에 파견된 세와키가 매수인과 조선내륙에 들어가 정탐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서둘러 귀국한 사실에 의문이 생긴다. 세와키로부터 조선의 지식인 김인승에 대한 보고 받은 외무성에서 김인승을 매수하여 함께 귀국할 것을 명령한 것은 아닐까? 조선내륙 정탐은 많은 시간과 신변안전이라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조선의 지식인 김인승을 매수하는 편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은 아닐까? 이 지도의 예언에는 육군참모국에서 이미 조선팔도전도(朝鮮八道全圖)라는 조선의 지도를 입수한 상태이다. 이점에서도 직접적인 조선 내륙정탐보다 조선지식인의 자문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 가지 덧붙이면 1875년 9월 일본 해군이 조선연안을 실측하며 의도적으로 일으킨 강화도사건을 일으킨 2개월 후 11월에 육군참모국에서 제작한 조선전도라는 외방도가 완성되었다. 이 기간은 김인승이 고용된 기간과 맞물려 있으며, 더욱이 김인승의 고

용기간이 연장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될 당시 김인승은 일본정부의 고용인으로 일본 정부가 유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통역과 자문을 한 자이다.

그리고 육군참모국은 조선전도를 제작하면서 한반도의 양쪽에 부분도를 배치하였다. 5개의 부분도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해에 배치되어 있는 부분도는 부산포와 ユンヒン灣²⁷⁾, 서해에 배치되어 있는 부분도는 한강 어귀(漢江口), 대동강, 청국산동성(淸國山東省)이다. 이 부분도는 청국 산동성을 제외하면 모두 조선 연안에서 내륙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요 관문에 해당된다. 이것은 1875년 일본 해군의 함정 운양호가 5월부터 9월에 걸쳐 약 4개월 동안 한국의 동해, 남해, 서해의 강화도 일대를 무단 실측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부분도를 보면 한눈에 수많은 점들이 보인다. 이것은 수심 또는 저질 등을 나타낸 숫자 또는 영어 알파벳을 기록한 것으로 실제 실측에 의해 제작된 해도를 의미한다. 이 조선전도의 예문에는 영국과 미국의 해도를 참조한 사실이 밝혀져있다. 즉 부분도는 일본 해군이 실제 측량한 해도가 아니라 영국과 미국의 해도를 복제하여 배치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해도의 상단 왼쪽에는 조선과 청국(淸國)과의 경계가 분명하게 표시되어있다. 또한 이 지도의 명칭이 조선전도인데도 불구하고 조선과 접경을 이루는 청국에 지명과 역(驛), 하천, 산등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지도의 하단에서 오른쪽 부분에는 일본 규슈의 나가사키, 후쿠오카, 히라도, 쓰시마, 고도, 잇키 등이 그려져 있다. 조선전도라는 외방도에 조선의 주변국인 청국과 일본이 그려진 이유가 무엇일까 이를 군사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일본군이



- 図帳グループID : 84697511
- 図帳ID : 84697511_001
- 図帳グループ名 : 朝鮮全圖
- 図帳名 : 朝鮮全圖
- 作製者 : 陸軍文庫
- 大きさ : 128×90
- 年代 : 明治27(1894)年
- 地理座標(範圍) : 32.1793,43.2250,120.9685,132.2625
- 関連図 : 84697511_001t

그림 5 1875년 조선전도(미국의회도서관)

이 나타난 다양한 색상이 없지만 이외에 그대로이다. 육군참모국에서 1년 만에 조선전도를 재발행한 것은 1876년 체결된 강화도조약과 무관하지 않다.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그해 부산이 최초 개항장이 되어 종래 왜관이 일본인 전관거류지가 되면서 일본어부를 비롯하여 행정관계자 그리고 수산업자들이 대거 몰려들었으므로 한국 지리정보지로 제공하기 위해 간행하였을

이 규슈의 여러 항에서 출발하여 조선의 주요 항으로 진입하여 조선 내륙을 통해 청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루트가 그려진다. 그리고 부분도를 통하여 조선에서 청국의 루트는 육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해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으로 진출하는 최단거리의 진출은 육로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청국산동성(淸國山東省)을 배치한 것은 조선의 서해에서 산동성으로 가는 최단거리이다. 이러한 정보는 김인승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당시 조선전도라는 외방도는 조선침략을 이어서 중국침략까지 계획된 일본 군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육군참모국은 1876년에 조선전도를 재간행하였다. 이 조선전도²⁸⁾는 1875년 조선전도에 도계(道界)를 명확

27) ユンヒン灣은 어디인지 알 수 없으나 한국 동해의 주요항인 원산만으로 추정된다.

28) 부산광역시, 『釜山古地圖』, 2008, 254쪽.

거로 생각된다.²⁹⁾

또한 앞에서 구미 각국 간의 해도공유가 이루어진 것은 식민지구축과도 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살펴보았다. 일본정부는 이점에 착안하여 육군참모국에서 제작한 외방도, 즉 조선전도를 대량 인쇄하여 구미 각국의 관계자들에게도 제공하고자 다량으로 재발행한 것은 아닐까? 또한 근대의 국제법인 만국공법을 의식한 것은 아닐까? 육군참모국의 조선전도 중 1875년에 간행한 것은 강화도조약 체결 전이며, 1876년은 강화도조약 체결 후에 간행된 것이므로 앞의 설명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육군참모국의 조선전도를 보면 지도의 예문에 명치 8년(1875) 11월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그림 5>에서 제시한 미국의회도서관의 기록에는 명치27년(1894)으로 되어있다. 이것이 오기(誤記)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다음의 글에서 풀어보고자 한다.

3-3) 한국전도(육군 참모국, 1887년)

한국전도³⁰⁾라는 외방도는 1887년 간행되었으며, 현재 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장되어있다. 이 외방도는 한반도의 지형에는 격자형의 모양이 있다. 그리고 각 칸에는 1에서 69까지의 숫자를 기록하였다. 숫자가 기록된 각칸을 지도의 가장자리에 기록되어 있는 경도와 위도를 맞추보면 각 칸에 해당되는 지역의 경도 위도를 파악할 수 있다. 지역의 경도 위도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에 해당된다.

이 외방도는 전술하였던 2개의 조선전도에 기록된 지도의 설명이 없다. 그러나 지도의 왼쪽 여백에는 6명의 인명과 직책 수행 임무가 기록되어있다. 이소바야시 신조(磯林真三)·와타나베 고타로(渡邊鐵太郎)·카이즈 미츠오(海津三雄)·오카 야스코(岡泰郷)·미우라 지타카(三浦自孝)·가라다 칸지로(柄田鑑次郎) 등 6명 중 가라다(중위)를 제외하면 모두 계급이 대위로 일본군의 장교(이하 밀정)들이다. 그리고 이름 아래에는 각각의 선을 그려 옆에는 연도를 기록되어 이 한국전도라는 외방도는 6명의 밀정에 의해 1883년부터 1887년에 걸쳐서 조선의 노선을 정탐하고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다³¹⁾ 더욱이 이 외방도는 ‘족적지정도(足跡指定圖)’라는 기록물이 세트로 보관되어 있다. 족적은 6명 밀정들의 조선정탐경로를 말한다. 우선 밀정의 이름 앞에 색깔로 구분한 6개의 동그라미(그림 7)를 점선, 직선+점선, 철도선 등 여러 형태로 그

29) 강화도조약의 제4관에 “조선국 부산(釜山) 초량항(草梁項)에는 오래 전에 일본 공관(公館)이 세워져 있어 두 나라 백성의 통상 지구가 되었다. 지금은 종전의 관례와 세건선(歲遣船) 등의 일은 혁파하여 없애고 새로 세운 조관에 준하여 무역 사무를 처리한다. 또 조선국 정부는 제5관에 실린 두 곳의 항구를 별도로 개항하여 일본국 인민이 오가면서 통상하도록 허가하며, 해당 지역에서 임차한 터에 가옥을 짓거나 혹은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은 각각 그 편의에 따르게 한다.”와 “제5관 경기(京畿), 충청(忠淸), 전라(全羅), 경상(慶尙), 함경(咸鏡) 5도(道) 가운데 연해의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두 곳을 골라 지명을 지정한다. 개항 시기는 일본력(日本曆) 명치(明治) 9년 2월, 조선력 병자년(1876년) 2월부터 계산하여 모두 20개월로 한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그 해에 부산이 제일 먼저 개항되어 종래의 초량왜관일대를 중심으로 일본선박과 일본인의 자유 왕래는 물론이고 거류도 허용되었다. 그리고 이 조약에는 20개월 이내 2곳을 개항한다고 명시된 점에서 조선 거류를 희망하는 자국민을 위하여 조선지리정보를 제공하고자 조선전도(1876)를 간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30)

https://www.let.osaka-u.ac.jp/geography/gaihouzu/earlymap/views/2007630239/2007630239_001.html?agree=agree

(アメリカ議会図書館蔵 初期外邦測量原図データベース, 朝鮮全圖 2007630239)

31) <http://www.let.osaka-u.ac.jp/geography/gaihouzu/earlymap/map.php?n=2007630239>

(アメリカ議会図書館蔵 初期外邦測量原図データベース, 朝鮮全圖 2007630239)

려진 선 옆에 기록한 연도(그림 7)를 가지고 이 지도에 복잡하게 그려져 있는 노선을 보면 어떤 밀정이 몇 년도에 어떤 경로를 정탐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지도에 그려진 복잡한 노선은 평양과 서울(지도에는 漢城이라고 표기되어 있음)에 집중되었는데 특히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6명의 밀정들이 한국 내륙으로 잠입했던 출발지는 부산, 함흥, 신의주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의 접경지역인 경흥 등이다. 노선표를 보면 잠입한 지역에서 곧바로 정탐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6명의 밀정 중에는 유일하게 바다를 거쳐서 조선 내륙으로 잠입한 사례가 있다. — — — 의 황색 노선은 부산에서 거제 - 통영 - 남해 - 좌수영³²⁾까지 배로 이동하였다. 이 노선에는 당시 조선수군 기지가 있는 곳으로 군사상 매우 중요한 해안 루트이다 이곳을 정탐한 후 좌수영에서 순천으로 잠입하였다. 그림 6과 그림 7에 의하면 황색은 미우라 지타카(三浦自孝) 대위를 말하며, — — —의 노선은 1886년을 말한다. 즉 이 노선은 1886년 미우라 대위가 정탐한 루트이다. 미우라는 이 노선을 정탐하기 전에 이미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도를 정탐한 사실을 또 다른 형태의 그려진 황색 노선에서 알 수 있다. -----로 그려진 황색선을 추적하면 1885년에 미우라가 김해에서 출발하였다. 루트를 열거하면 김해 - 웅천 - 창원 - 함안 - 진주 - 하동 - 구례 - 남원 - 장수 - 거창 - 고령 - 성주 - 선산 - 상주 - 용궁 - 예천 - 안동 - 청송 - 진보 - 영양 - 영해 - 영덕 - 청하 - 흥해 - 연일 - 경주 - 언양에서 임무를 마무리하였다. 이 임무를 완수하자마자 곧바로 부산에서 다음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 — — 로 그려진 황색 노선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1886년이며 부산에서 바다로 이동해서 내륙으로 잠입한 루트이다. 부산에서 여러 섬을 정탐한 후 전라남도 순천으로 잠입한 정탐경로를 열거하면 먼저 순천 - 곡성 - 남원 - 전주 - 진안 - 장수 - 함양 - 산청 - 진주를 정탐한 후 전주로 돌아왔다. 두번째는 다시 전주 ↔ 은진, 은진 ↔ 화성³³⁾ 일대를 오가기를 반복하면서 면밀하게 조사한 후에 화성 - 수원 - 서울(한성)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더 이상 복진하지 않고 남하하였는데 루트를 열거하면 서울 - 이천 - 음죽³⁴⁾ - 음성 - 괴산 - 보은 - 청산(옥천군) - 상주 - 선산 - 칠곡 - 대구 - 경산 - 청도 - 밀양 - 김해에서 임무를 마무리하였다.³⁵⁾ 1886년 임무를 수행한 후 1887년에는 개성에서 출발하여 평양을 거쳐 압록강 국경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다시 평양으로 내려왔다가 서해안의 남포항으로 갔다가 해주를 거쳐 개성으로 돌아와서 서울(한성)과 연결된 교하를 정탐한 것으로 최종 임무를 미쳤다³⁶⁾.

1887년 한국전도라는 외방도는 1875년 「조선전도」와 비교하면 전체적인 윤곽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섬 정보는 오히려 축소된 내륙 중심의 지도이다. 그리고 6명의 일본 밀정에 의해 조선의 노선은 한 국가의 특급 군사기밀이다. 이것은 조선침략의 사전 준비였다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일본 군부가 비밀리에 제작한 외방도는 조선 침략을 위해서 제작하였다는 것을 극

32) 좌수영이 있는 여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33) 기호 ↔로 표시한 것은 출발지와 도착지의 전반적인 노선을 조사한 것을 말한다.

34) 음죽군(陰竹郡)은 경기도 이천시의 옛 행정 구역으로, 지금의 장호원을 설명면 울면에 해당된다. 1895년 충주부 관할 음죽군은 1910년 북면과 서면이 각각 원북면과 근북면으로 개칭되었다가 1914년 일제에 의한 행정폐합으로 이천군에 합병되면서 일부 마을이 음성군에 분할 편입되었다.

35) 서경순, 『『韓國水産誌』에 보이는 군산지역 海圖에 관하여』, 『2017년 제8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자료집 2 분과회의』, 2017, 263~265쪽

36) 남영우·渡辺理繪·山近久美子·이호상·小林 茂, 「朝鮮末 日帝 參謀本部 장교의 한반도 정찰과 지도제작」, 『대한지리학회지』 44-6, 2009, 772~773쪽.

명하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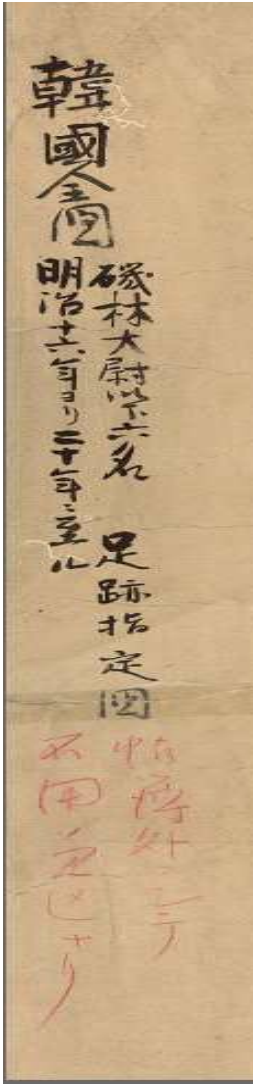


그림 6 조선전도 (1887)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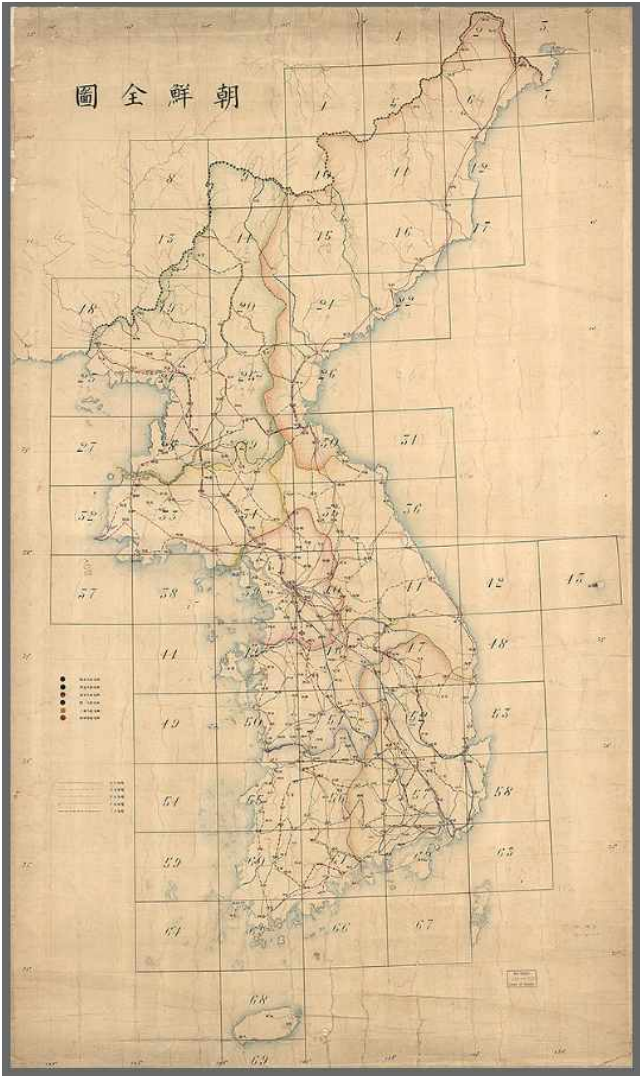


그림 7 조선전도(1887)



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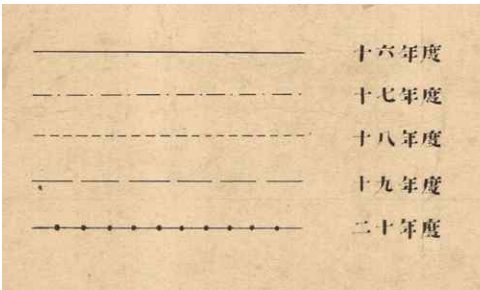


그림 9

3. 『한국수산지』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 일본 정부는 이듬해 2월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각 지방에 이사청을 두어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산분야는 1908년 『한국수산지』 편찬사업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수산조사를 실시하였다.

3-1) 편찬 배경

1876년 체결된 강화도조약에 의해 부산항을 시작으로 원산항 인천항이 차례로 개항되었고, 동시에 외국인 거류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바다에서 일본 해군의 실측 또한 합법화되었다.³⁷⁾

그리고 1883년에는 조일통상장정이 체결되어 일본 어부들이 합법적으로 한국 어장에서 조업을 할 수 있었다. 이 장정(조약)에는 한일 어부들의 상호 어업활동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한국의 경우 도처에 수산물이 풍부하여 연안 조업만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었으므로 어구 어법 등이 연안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한국의 사정과는 달랐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산진흥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어구 어법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연안은 남획으로 인하여 고갈되어 실업어부들이 속출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연안출어장려시책’을 마련하여 일본 어부를 대거 한국 연안에 출어시켰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은 일본 어부들은 선단을 조직하여 한국 연해로 몰려들었다. 조일통상장정을 이어서 1888년과 1889년에도 장정이 체결되어 일본어부들의 조업을 보다 유리하게 하였다. 그리고 1889년에는 일본 어부들의 어획물을 관리 유통하는 부산수산회사가 부산에 설립되었다. 일본 어부들은 어획물을 이 회사가 마련한 어시장에 납품만 하면 된다. 어획물에 대한 판매 유통은 이 회사가 대행하였으므로 조업에만 주력하면 되었다.³⁸⁾

그리고 일본의 수산전문가들이 한국에 파견되어 한국어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일본 정부의 최초 공식적인 조사는 수산국 국장, 세키자와 아케키요(關澤明清) 일행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들은 1892년 11월 내한하여 1893년 3월 초까지 약 100일간 한국의 황해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6도의 연안지역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하고 돌아가서 『조선통어사정(朝鮮通漁事情)』(關澤明清 竹中邦香 공저, 1893)이라는 한국연안조사보고서를 간행하였다. 그리고 수산국의 수산기사(기수)들의 한국연해 조사가 연이어져 한국연안조사보고서가 계속적으로 간행되었다.³⁹⁾

1897년에는 원양어업장려법을 공포하여 원양선박과 원양선원에 대한 지원의 폭을 강화하였다. 원양어업에 적합한 설비 및 기능을 갖춘 동력선과 원양선원을 겸비한 선박회사에 장려금을 지원하였다. 정부의 지원 폭이 확대되자 한국어장에 일본 출어자들도 급증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들에 대한 감독통제의 필요성에 1902년 외국영해수산조합법을 공포하여 각 부현에 조선해

37) 일본 해군 수로부에서 한국연안을 실측한 결과물로 『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1894)가 있다.

38) 서경순, 『메이지시대의 수산진흥정책과 일본수산지(日本水産誌)의 편찬에 대한 연구』, 부경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1, 200쪽.; 서경순, 『환동해의 중심 울릉도·독도』, 도서출판 지성인, 2023, 94~95쪽(이 책은 (재)독도재단의 지원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모두 7명의 저자가 참여하였다).

39) 서경순·이근우, 「한국수산지의 내용과 특징」, 『인문사회과학연구』 20-1,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9, 128쪽.; 앞의 책(서경순), 95~96쪽.

통어조합을 설치하여 외국 영해 출어자들을 보호 명목을 앞세워 강제 가입시켜서 감독통제의 수단으로 삼았다. 그리고 러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 정부는 1905년 3월 원양어업장려법을 개정 공포하여 한국이주자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한편 수산국의 수산기사를 파견하여 일본인 근거지역에 대한 한국 연안 지역의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 내에 일본인 거류지확장 업무는 부산에 설립한 조선해수산조합본부에서 담당하였는데 조합에 파견된 수산기사(기수)들이 추진하였다. 조선해수산조합은 당시 통감부의 지시를 받던 반관반민단체였다.⁴⁰⁾

그리고 1908년에는 한일어업협정이 제정되어 일본 어부들은 한국의 바다는 물론이고 내륙의 강과 하천에서도 조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의 바다, 강, 하천 모두 일본 어부들의 조업의 무대가 되었다.⁴¹⁾

일본 정부의 한국출어 및 한국 이주 장려지원시책의 결과 한국 어촌지역에 일본인 근거지가 대폭 확장되었다. 그리고 일본 어부들을 위한 한국 연안의 지리 정보를 포함한 수산 정보지가 요구되었다.

『한국수산지』는 한국의 각 도별 수산분야를 철저하게 조사 정리한 서적이다. 전체 일본어로 기록된 점은 편찬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독자층을 일본인에 맞추고 한국인은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한국수산지』 제2권~제4권은 각도별로 구분하여 조사 지역별로 역사 지리, 경계, 면적, 호구, 교통 등 여러 정보를 먼저 정리한 후 수산 분야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書名이 수산지인데 굳이 조사지역에 대한 연혁 및 한국인 호구 수 그리고 지역 어부(원주민)들의 어선, 어구 및 어법 그리고 장시(場市)까지 조사하여 어획물의 유통 경제까지 면밀하게 조사 정리하였다. 더욱이 일본인 근거지에 대한 것은 매우 면밀하게 조사 정리하였는데, 일본 어부가 근거할 경우는 그들의 출신지, 수산단체, 어선 및 어구, 어종, 물량, 유통 경제까지 매우 소상하게 밝혀두었다. 이 정보는 낯선 한국으로 출어 및 이주를 희망하는 일본인들에게 사전에 제공하여, 한국에 먼저 정착한 일본인들이 정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으며 안전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많은 출어 및 이주자를 기대하면서 의도적으로 기술했던 것이 아닐까?

3-2) 『한국수산지』의 해도

『한국수산지』는 사진 활용, 근대 통계표, 색인, 근대적 수산분류, 지도와 해도 활용 등 근대적인 요소가 갖추어져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수산지리정보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해도의 경우는 근대 상징 중 하나이다. 『한국수산지』 제2권~제4권에는 51개의 해도(지도)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중에 11개 해도에는 해도번호가 기록되어있다. 당시 해도 제작은 해군에서 전담하였던 점에서 이 번호는 해군 해도의 일련번호로 추정된다. 『한국수산지』 제2권 범례 6항에는 “삽입한 지도의 지형 중 해도에 근거한 것은 란(欄) 바깥에 그 뜻을 부기하였다”고 밝혀두었으며, 참고지도 란에도 첫 번째에 해도(海圖)가 기록되어있다.

51개의 해도(지도)에서 시가도(市街圖)와 평면도(平面圖) 등을 제외한 해도에는 거의 경도, 위도, 방위표, 수심을 나타낸 숫자, 저질(底質), 등대, 정박지, 사변(海邊), 갑각 등이 표시되어 있다. 이 정보는 실제 연안 측량에 의한 해도라는 것을 암시한다.. 해도번호가 기록되지 않은 것도 일본 해군 수로부의 해도를 차용 복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9>와 <그림 10>은 『한국수산지』에 첨부된 해도이다. <그림 9>는 해도번호가 기록되어 있어서 해도의 출처를

40) 서경순 박사학위논문, 206~212쪽.; 앞의 책(서경순), 96쪽.

41) 서경순 박사학위논문, 207쪽.

명확히 알 수 있는데, <그림 10>의 경우는 어떤 해도를 차용하였는지 그 출처를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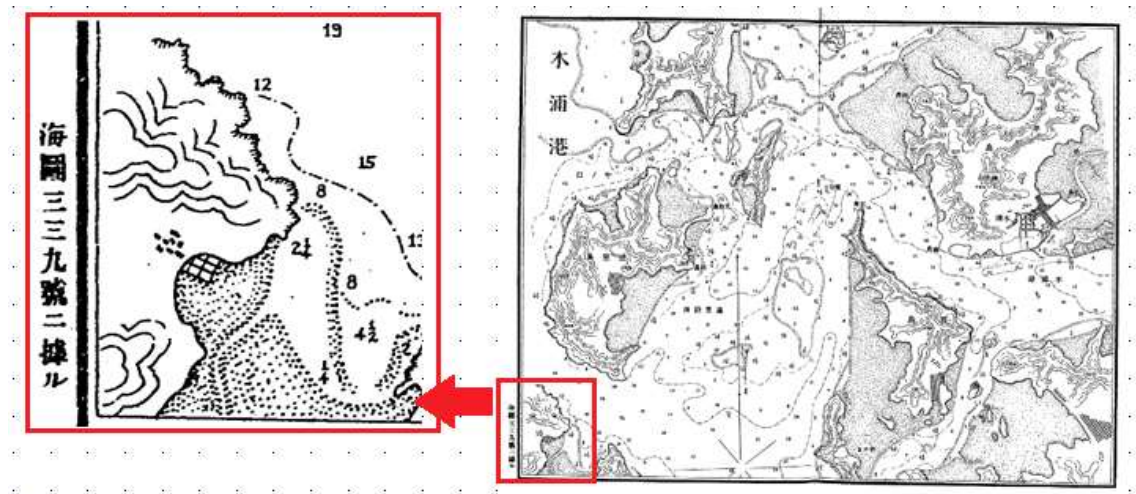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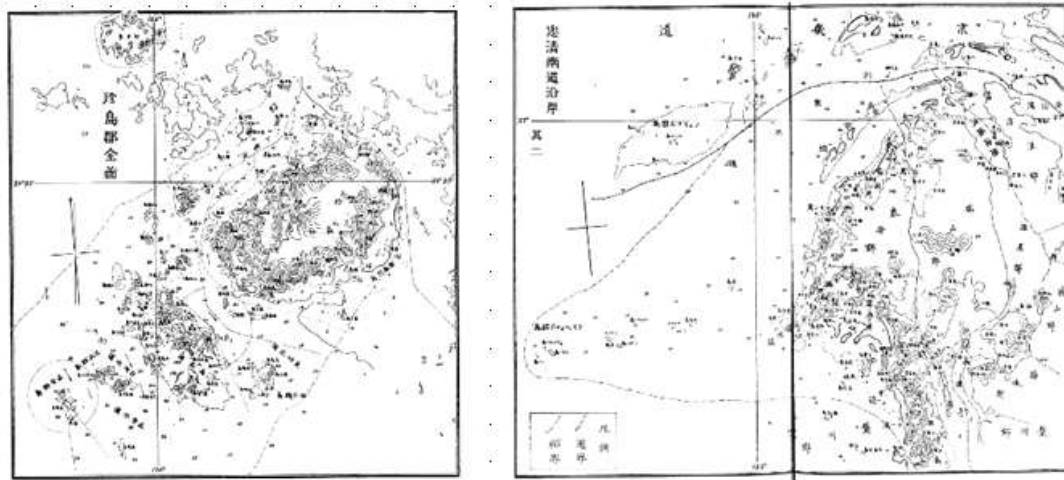


그림 10> 海圖三三九號=據ル(해도339호에 의거)

출처:『韓國水産誌』3輯



<그림 11> 智島郡全圖(左), 忠清南道沿岸(右)

※ 출처:『韓國水産誌』3輯

다음 <표 4>42)는 『한국수산지』에 첨부된 해도를 순서대로 열거한 것이다.

42) 『한국수산지』 제2권~제4권,; 国立国会図書館(<https://dl.ndl.go.jp/pid/802155>)(검색일 2023.01.12)

<표 10> 『한국수산지』의 해도

	구분		해도명칭(『한국수산지』)	일본해군 해도	일본국회도서관
1	제2권	함경도	조산만(造山灣)		함북 慶興府 pp.81
2			경성만(鏡城灣)	해도 312호	함북 鏡城郡 p.108
3			성진포(城津浦)	해도 318호	함북 城津府 p.122
4			차호만(遮湖灣)	해도 318호	함남 梨元郡 p.136
5			신창항 부근(新昌港附近)	해도 318호	함남 北靑郡 p.143
6			신창 및 마양도(新昌及馬養島)	해도 321호	함남 北靑郡 p.149
7			서호진(西湖津)		함남 咸興郡 p.165
8			원산진(元山鎭)		함남 德源府 p.191
9		강원도	강원도 其1		강원 歙谷郡 p.227
10			장전동 정박지(長箭洞)		강원 通川郡 p.235
11			강원도 其2		강원 高城郡 p.239
12			강원도 其3		강원 襄陽郡 p.255
13			강원도 其4		강원 三陟郡 p.265
14			죽변만(竹邊灣)	해도 312호	강원 蔚珍郡 p.277
15		경상도	축산포(丑山浦)	해도 312호	경북 寧海郡 p.313
16			영일만(迎日灣)		경북 迎日郡 p.325
17			울산항 부근	해도 312호	경남 蔚山郡 p. 333
18			부산항만 설비평면도		경남 東萊府 p.364
19			용남군(龍南郡)구역도		경남 龍南郡 p.405
20			통영전도(統營全圖)		경남 龍南郡 p.415
21			삼천포항		경남 泗川郡 p.441
22			울릉도(鬱陵島) ⁴³⁾		경북 울진군 p.450
23	제3권	전라도	여수군		전남 麗水郡 p.83
24			전라남도 서연안		전남 羅州郡 p.106
25			목포항	해도 339호	전남 務安府 p.112
26			목포항시가 및 부근도		전남 務安府 p.117
27			돌산군전도(郡界、面界)		전남 突山郡 pp.146~147
28			돌산군 전도	해도 304호	전남 突山郡 pp.148~149
29			나로도		전남 突山郡 p.167
30			완도군(郡界、面界)		전남 莞島郡 p.179
31			완도군		전남 莞島郡 p.180
32			진도군 전도		전남 珍島郡 p.208
33			지도군(智島郡) 전도		전남 智島郡 pp.227~228
34			제주도(郡界、面界)		전남 濟州島 p.262
35			전라북도 전연안		전북 p.310
36			군산항 부근(群山港附近)	해도 333호	전북 沃溝府 p.329
37			군산항 시가도		전북 沃溝府 p.333
38		충청도	충청남도연안 其1(道界、郡界、面界)		충청도 p.388
39			충청남도연안 其1(道界、郡界)		충청도 p.465
40			충청남도연안 아산만(牙山灣)		충남 秦安郡 p.487
41	제4권	경기도	경기도 전도 其1		경기도 pp.60~66
42			제물포정박지(濟物浦錨地)		경기도 仁川府 p.98
43			경기도 전도 其2		경기도 富平郡 p.117
44		황해도	황해도 其1		황해도 pp.191~192
45			황해도 其2		황해도 p.219
46			황해도 其3		황해도 p.237
47		평안도	평안남도 其1		평남 p.268
48			진남포항 평면도		평남 鎭南浦府 p.275
49			평안남도 其2		평남 pp.288~289
50			평안북도 其1		평북 p.299
51			평안북도 其2		평북 p.308

<표 4>에 제시한대로 『한국수산지』에 첨부된 해도는 2권에 22개, 제3권에 18개, 제4권에 11개로 모두 51개이다. 이중에 해도 번호가 기록된 것은 제2권에 8개(해도 312호, 해도 318호, 해도 321호), 3권에는 3개(해도 304호, 해도 333호, 해도 339호)이며, 제4권에는 없다.

3-3) 한국수산지의 해도에 해도번호가 기록된 사례

『한국수산지』 3집의 제4장 전라북도 제5절 옥구부(沃溝府)에 군산항부근(群山港附近)이라는 해도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 해도의 왼쪽 여백에 해도 333호가 명시되어 있어 그 출처를 알 수 있다. 일본 해군 해도 333호의 해도명칭은 ‘군산항 및 부근(群山港及附近)’이다.

<그림 11>은 『한국수산지』 제3집에 첨부된 해도인데 이 해도는 왼쪽 여백에 ‘해도 333호에 근거(海圖 333號=據ル)’를 명시되어 있다.⁴⁴⁾ <그림 12>는 해군 해도 333호⁴⁵⁾이다. 두 해도의 지도명칭에서 『한국수산지』의 해도는 해군의 해도 333호를 차용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개의 해도는 윤곽선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얼핏 보아도 극명한 차이점이 드러나있다. 우선 해도 333호를 살펴보자. 우측 상단에 ‘군산항 및 부근(群山港及附近)’이라는 해도 명칭과 바로 아래에 해도의 설명 및 타원형의 스탬프⁴⁶⁾가 찍혀있다. 그리고 나침반을 연안과 내륙에 각각 배치하였다. 연안부에는 영어 알파벳과 숫자들이 뿔뿔하게 기록되어 마치 점을 찍은 놓은 것처럼 보인다. 이에 비하여 『한국수산지』의 해도는 해도의 설명·스탬프·나침반이 생략되어 있으며, 연안부에도 사빈, 향로, 향구 등의 기본적인 정보만을 표시하여 빈 공백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내륙부에는 등고선, 도로, 주거지역 등의 정보가 추가되어 해도 333호보다 오히려 상세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이 주거지역에는 일반 주거지역은 검은 바둑알 모양으로 그렸는데 군산 조계구역에는 네모반듯하게 그려 잘 구획된 도시 모습으로 차별화하였다. 『한국수산지』의 해도는 일본 해군의 해도를 차용하였지만 군사적 기밀에 해당되는 정보를 삭제한 후 내륙부에는 정보를 추가하여 복제하였다. 군산항을 비롯한 인근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편익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미 상세하게 조사 측량했던 해군의 해도 내용을 굳이 생략하고, 해안선, 갯벌, 향로, 향구 등의 기본적인 정보만을 나타내어 연안부를 거의 공백 상태로 만든 이유는 새로운 의문으로 남는다. 이 점은 앞으로 밝혀야 할 부분이다.

군산항은 1899년 개항되어 일본의 본격적인 경제 침탈의 장이 된 곳으로 일본으로의 미곡반출의 대표적인 장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곳은 한국산 수산물의 수탈의 장소이기도 하다. 군산항이 개항되면서 군산항을 비롯한 인근 어촌마을에 일본 어부들의 근거지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한국 어부들의 생계에 많은 타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일본어부들은 선단을 조직하여 동력선으로 작은 목선으로 조업하는 한국어부들의 삶의 터전에서 어획물을 남획하여 일본으로 대거 반출하였다. 특히 초기 성어기에는 칠산탄과 군산 앞바다에는 나가사키, 구마코토, 사가현, 후쿠오카 등에서 몰려든 출어선이 1천여 척이 넘었다고 한다. 군산지역은 조계지역이 형

43) 원문에는 울릉도의 한자를 鬱陵島로 표기하였다.

44) 조선총독부, 『韓國水産誌』 第3輯, 506쪽과 507쪽 사이 삽입되어 있다(<그림 11>의 네모박스로 표시한 곳에 해도번호가 명시되어 있다).

45) <http://chiri.es.tohoku.ac.jp/~gaihozu/ghz-list.php?lang=ja-JP&search=&pl2=201&p=6>
(검색일:2019.02.10.)

46) 스탬프 안에는 41. 6. 10 이라는 숫자가 찍혀있는데 명치41년(1908) 6월 10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산지 3권은 명치43년(1910) 10월 30일 조선총독부 농상공부에서 편찬 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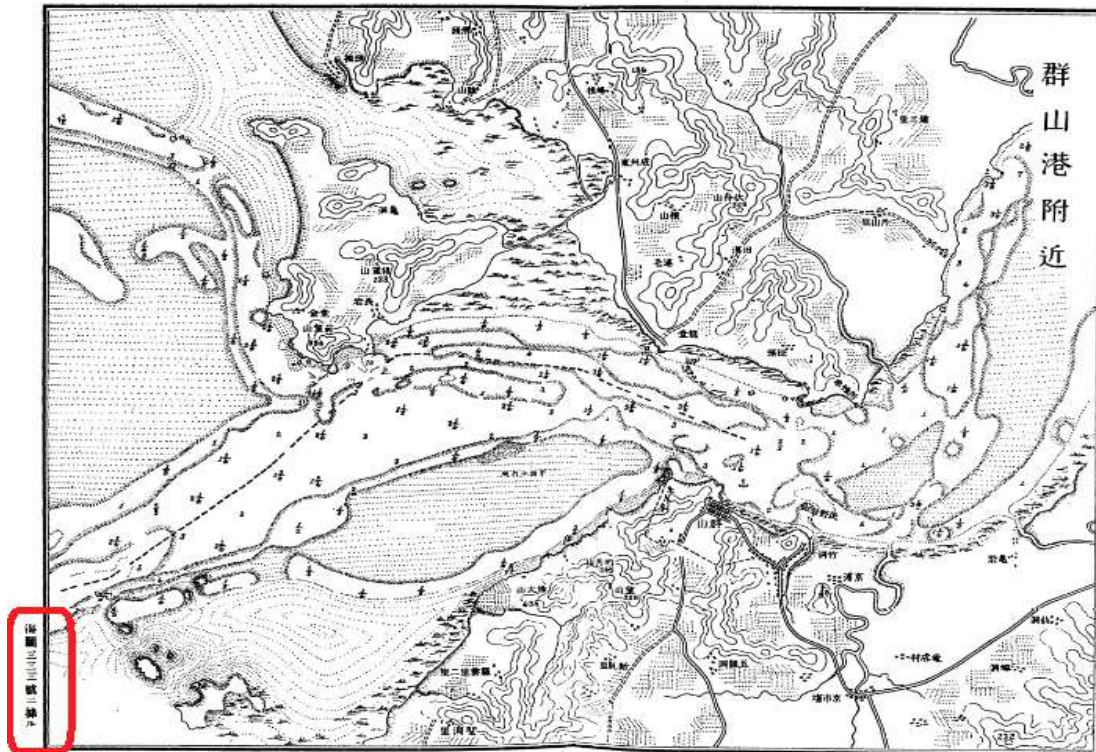


그림 12 群山港附近
성된 곳이며, 군산항은 일본으로의 미곡 및 수산물을 반출하였던 매우 중요한 항구였다.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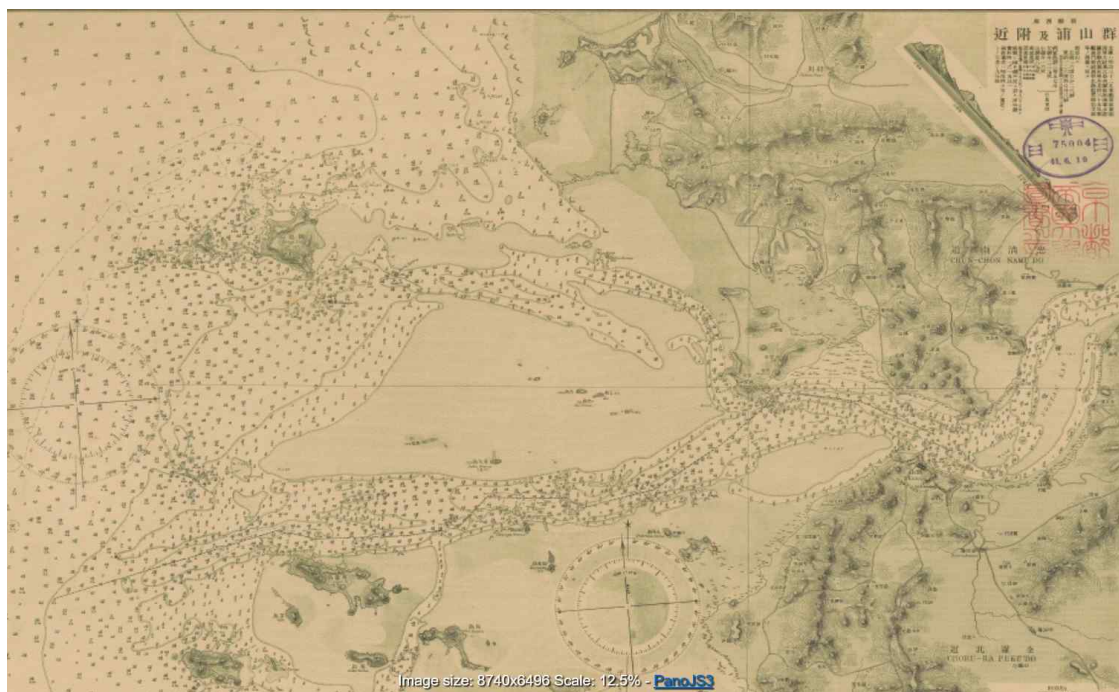


그림 13 群山港及附近(해도 333호)

서 『한국수산지』 제3집에 첨부된 군산항부근(群山港附近)이라는 해도는 그 역할을 톡톡히 하였을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면 당시 옥구부에는 군산항에서 제법 떨어진 섬에 일본인 근거지가 형성되었다. 일본 어부들은 어획물을 활어로 일본으로 수송하였는데 방법은 대나무로 만든 수조에 어획물을 넣어 며칠간 적응시간을 거친 후에 일본으로 운송하였다. 수조는 어느 정도 수심이 있어야 기능이 가능하다. 전라북도의 연안 대부분 갯벌이었던 점에서 갯벌에서 멀리 떨어진 어청도에 일본 어부들이 근거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어청도는 U자형의 내륙으로 움푹 들어간 안전한 정박지와 질 좋은 급수 등 좋은 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또한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련을 점수하면서 대련·오사가 항로가 개설되자 어청도는 중간 기항지의 역할도 하였다. 어청도는 깊은 수심, 안전한 정박지, 풍부한 식수 등의 여러 조건은 군사물자 보급지로 최적지가 되어 어청도는 서해방어기지 역할을 하는 군사요충지가 되었다.⁴⁷⁾ 그리고 내륙에서 어청도를 가려면 거의 군산항을 이용하였다.



그림 14 朝鮮南東岸(1902년 발행)

3-3) 『한국수산지』의 해도에 해도번호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례

47) 앞의 논문, 「한국수산지의 내용과 특징」, 143~144쪽

『한국수산지』 3집에 첨부된 여수군이라는 해도에는 군산항부근(群山港附近)과 다르게 해도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해도를 일본 해군이 제작한 조선남동안(朝鮮南東岸)과 비교해보면 앞에서 살펴본 군산항부근(群山港附近)과 ‘군산항 및 부근(群山港及附近)’의 두 해도에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윤곽선에서 별 차이가 없으며, 『한국수산지』의 해도의 연안부에 해군 해도의 정보가 대부분 생략되어 하얀 공백이 드러나 있다.⁴⁸⁾ 그런데 『한국수산지』의 해도에 해도번호를 기록되지 않은 것은 해군의 해도에 해도번호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림 13>을 살펴보면 해도 번호를 알 수 없다고 표시되어 있다. 이 해도를 자세히 보면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특히 가장자리에 손상이 많이 생겼다. 왼쪽 상단에 기록한 해도의 설명을 통하여 이 해도는 일본 해군 수로부에서 1895년부터 1899년에 걸쳐서 한국(조선)의 남동안을 실측한 결과물이며, 1902년 발행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도의 번호는 알 수 없다. 당시 해도번호는 해도의 왼쪽에 기록하였다고 가정해보면 가장자리가 손상되면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림 14>에 제시한 『한국수산지』에 첨부된 여수군의 해도를 조선남동안의 해도에서 여수반도 부분만을 비교해 보면 『한국수산지』의 해도는 일본 해군의 해도를 차용하여 복제해서 첨부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여수군은 한국의 수군절도영(좌수영)이 있던 군사요충지이다. 당시 여수에 일본 어부들의 어획물을 유통 관리하는 조선해수산조합의 출장소가 설치된 점에서 여수는 일본 출어자들이 조업이 활발했던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여수에는 일본 수비대까지 주둔하여 일본 어부들의 보호 및 감독통제가 이루어졌다.⁴⁹⁾ 여수군의 해도는 군사적인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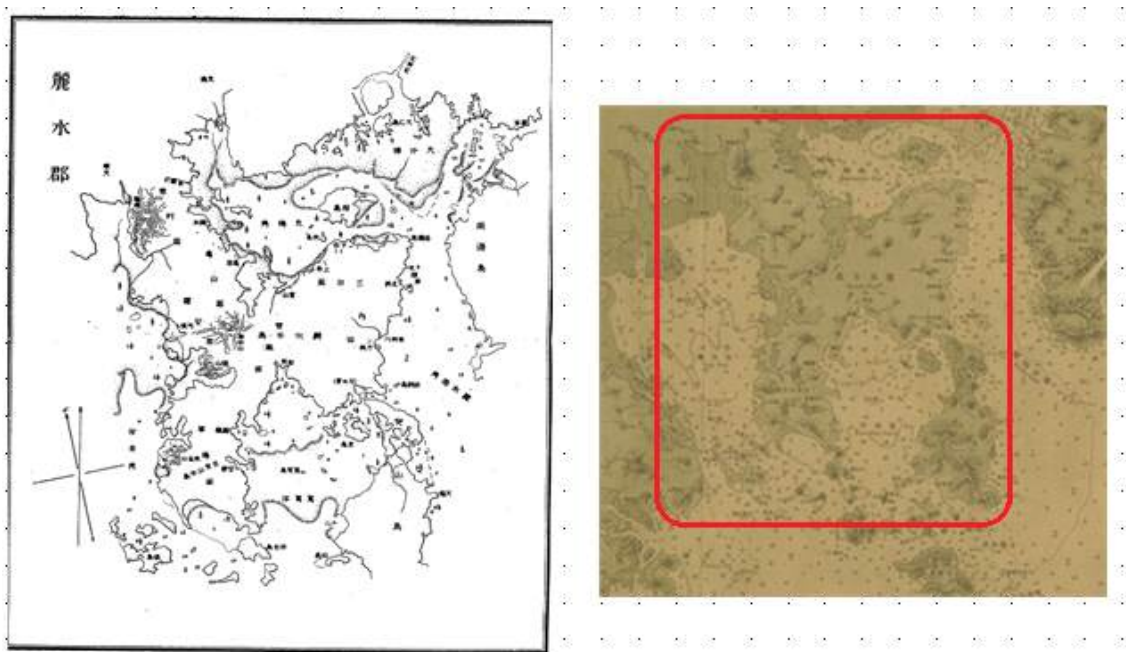


그림 15 한국수산지의 해도(左), 일본 해군의 해도(右, <그림 13>에 표시한 네모박스부분을 확대한 것.)

48) 일본해군 外邦圖デジタルアーカイブ/海図
<http://chiri.es.tohoku.ac.jp/~gaihozu/ghz-list.php?lang=ja-JP&search=&pl2=201&p=6>(검색일, 현재 이 사이트가 열리지 않는다).

49) , 朝鮮總督府 農商工部, 『韓國水産誌』 3, 67쪽, 72쪽.:

앞에서 언급한 일본정부가 최초 공식적으로 한국연안을 조사한 후 저술한 『조선통어사정(朝鮮通漁事情)』에는 총론에 “일본 어부들이 한국연해로 출어하여 조업을 하게 되면 조류, 해저, 암초, 등 한국연해 지리를 저절로 숙지하게 되니 어부들을 군사상 이용하면 편리할 뿐만 아니라 해병으로 삼을 수 있고 일본 해군의 해도에 오류가 많은 데 이 어부들을 물길 안내자로, 또한 측량함이 명확한 해도를 작성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⁵⁰⁾고 밝혀 두었다. 이 서적을 저술한 세키자와와 다케나카는 당시 수산국의 고위층 간부였다. 그리고 수산국은 식산흥업을 주관하는 농상공부 산하의 부서였던 점과 아울러 세키자와는 일본 정부가 공인한 수산기사 1호였던 점을 감안해보면 수산국의 한국연해 조사는 일본어부의 본격적인 한국연해 출어장려의 목적과 그 이면에 군사적인 논의도 있었던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한국수산지에 첨부된 해도는 일본 해군의 해도의 정보가 많이 삭제되었지만 일본 어부의 안전 항해를 도모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세키자와의 보고 내용을 수용하여 어부들에게 근대 해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첨부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50) 이근우, 「明治時代 일본의 朝鮮 바다 조사」, 『수산경영론집』 43-3, 한국수산경영학회, 2012, 2쪽.; 앞의 책(서경순), 95~96쪽.

결론

참고문헌

大韓帝國 統監府 農商工部 水産局, 『韓國水産誌』 第1輯, 1908
大韓帝國 統監府 農商工部 水産局, 『韓國水産誌』 第2輯, 1910
朝鮮總督府 農商工部, 『韓國水産誌』 第3輯, 1910.
朝鮮總督府 農商工部, 『韓國水産誌』 第4輯, 1911.

<국내외 단행본>

小林 茂, 『近代日本の地圖作製とアジア太平洋地域』, 大阪大學出版會, 2009
小林 茂, 『外邦図 帝国日本のアジア地図』, 中央公論新社, 2011.
박영준, 『해군의 탄생과 근대 일본』, 그물, 2014, 28~29쪽.
미야자키 마사카츠 저, 이근우 역, 『해도의 세계사』, 도서출판 어문학사, 2017.
김용구, 『만국공법』, 도서출판 소화, 2008.
부산광역시, 『釜山古地圖』, 2008.

<국내 연구논문>

具良根, 「日本外務省 七等出仕 瀨脇壽人과 外國人顧問 金麟昇」, 한일관계사연구, 1997.
남영우, 「日帝 參謀本部 間諜隊에 의한 兵要朝鮮地誌 및 韓國近代地圖의 작성과정」, 『문화역사지리』 제4호, 1999.
남영우·渡辺理繪·山近久美子·이호상·小林 茂, 「朝鮮末 日帝 參謀本部 장교의 한반도 정찰과 지도제작」, 『대한지리학회지』 44-6, 2009.
정인철, 「카시니 지도의 지도학적 특성과 의의」, 『대한지리학회지』 41-4, 2006.
서경순·이근우, 「『한국수산지』의 내용과 특징」, 인문사회과학연구 20-1, 2019.

<국외 연구논문>

渡辺信孝, 「東北大學で所藏している外邦図とそのデータベースの作成」, 『季刊地理學』 50, 1998
星埜由尙, 『近代日本の地圖作製とアジア太平洋地域-「外邦図」へのアプローチ』, 小林 茂, 2009
船杉力修, 「分縣地圖の草分け『大日本管轄分地圖』について(1)」, 『淞雲』 19, 2017.
矢吹哲一郎, 「日本による近代海図刊行の歴史(明治5~18年)」, 『海洋情報部研究報告』, 2020.
佐藤 敏, 「明治初期の腐蝕法による海図銅版作製者」, 海洋情報部研究報告 第58号, 2020

<발표문>

서경순, 「『韓國水産誌』에 보이는 군산지역 海圖에 관하여」, 『2017년 제8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자료집 2』, 2017.
서경순, 「日本 海軍의 해도와 『한국수산지』의 海圖와의 비교」, 『제33차 東北亞細亞文化學會·東亞細亞日本學會 秋季聯合國際學術大會』, 2016.

조세현, 국제신문, 2018년 12월 4일자 21면 해양문화의 명장면<42> 「만국공법과 근대 동북아 해양분쟁」

<사이트>

<https://dl.ndl.go.jp/pid/802155>(검색일 2023.01.12)
[ja.wikipedia.org/wiki/水路部_\(日本海軍\)](http://ja.wikipedia.org/wiki/水路部_(日本海軍)) - キャッシュ.
(<https://www1.kaiho.mlit.go.jp/KIKAKU/kokai/kaizuArchive/birth/index.html>)-『검색일 2023.02.02.)
<https://www1.kaiho.mlit.go.jp/KIKAKU/kokai/kaizuArchive/birth/index.html>(검색일:2023.02.02.)
https://www.let.osaka-u.ac.jp/geography/gaihouzu/earlymap/views/84697511/84697511_001

.html?agree=agree(검색일:2023.02.02.);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kenkyuukai_houkokusho/takeshima04_01/takeshima04d.data/1-3-2-2.pdf(검색일:2022.09.19.)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kenkyuukai_houkokusho/takeshima04_01/takeshima04d.data/1-3-1-2.pdf(검색일:2022.09.19.).

【토론문】

【한일관계사학회 보고사항】

1. 2023년 학회 월례발표회

- 제205회 월례발표회 : 2023년 3월 11일(토)
- 제206회 월례발표회 : 2023년 4월 8일(토)

2. 《한일관계사연구》 79집 발간

- 《한일관계사연구》 79집이 2023년 2월 28일자로 발간되었습니다.
- 《한일관계사연구》 80집의 투고가 2023년 3월 31일자로 마감되었습니다.
- 《한일관계사연구》 80집은 2023년 5월 31일자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논문 게재를 희망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2023년 6월 30일까지 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논문을 투고하실 때 심사비 6만원(심사자 3인)을 입금해 주시면, 심사비 입금확인 후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논문게재비는 일반논문 10만원, 연구비수혜논문 30만원입니다.

3. 회비납부 안내

우리 학회는 선생님들이 납부하시는 소중한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신회비] •일반회원 : 40만원(15년限) •기관회원 : 50만원(15년限)

[연회비] •일반회원 : 3만원 •기관회원 : 4만원

•학생회원(학부생&석사과정생) : 1만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217002-04-676500 <예금주> 조인희